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책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I. 예산안 개요 / 1

- 1. 현 황 1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

II. 주요 현안 분석 / 9

- 1. 저소득층 지원 예산안 분석 9
 - 1-1.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간 인원 중복 산정 10
 -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위소득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필요 14
- 2. 보육제도 개편 예산안 분석 19
 - 2-1.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체계적 홍보 필요 21
 - 2-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23
- 3.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법령개정 전 예산 편성 및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 ... 27
- 4.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3
- 5.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38

III. 개별 사업 분석 / 42

- 1. 청년저축계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가입 배제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관리 필요 42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개편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 필요	47
3. 시범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식 등 적정성 검토 필요	53
4. 다함께 돌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등	59
5. 아동보호전담요원 신설 등 아동보호 체계 체계적 개편 필요	64
6. 노인일자리 사업 신중년일자리와 중복 문제 개선 필요 등	70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포괄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77
8.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수급률 제고 노력 필요	82
9.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85
10.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90
11.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 체계적 준비 필요	93
12.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97
1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101
14.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105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적정수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109
1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12
17.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인력 확충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116
18.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19
1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123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126



[식품의약품안전처]

I. 예산안 개요 / 129

- 1. 현 황 129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1
-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2

II. 개별 사업 분석 / 134

- 1.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본사업 추진 이전 법안 심사 경과 고려 필요 ... 134
- 2. 신규 도입 예정인 방사능 검사장비의 지방청별 배치 계획 수립 완료 필요 138
- 3.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차질
없는 수행 필요 142
- 4.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업체의 참여 활성화 필요 14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I. 예산안 개요 / 155

- 1. 현 황 15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59
-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60

II. 주요 현안 분석 / 162

-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향상 노력 필요 162
 -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향상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163
 - 1-2. 광역과 시군구 모니터링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필요 등 166
 - 1-3.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168

III. 개별 사업 분석 / 172

- 1.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관련 홍보사업 추진 철저 필요 172
- 2. 국제회의 개최사업 내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176
- 3.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179
- 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182
- 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의 신청률 향상 노력 필요 185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가. 총수입·총지출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 책임운영기관) 및 3개의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된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71조 6,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357억원(4.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00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2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427억원, 응급의료기금 866억원, 국민연금기금 67조 9,374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23,186	525,200	525,200	552,463	27,263	5.2
- 일반회계	264,466	472,273	472,273	500,218	27,945	5.9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8,720	52,927	52,927	52,245	△682	△1.3
기 금	65,008,986	68,058,278	68,058,278	71,066,741	3,008,463	4.4
- 국민건강증진기금	3,119,717	3,096,156	3,096,156	3,042,710	△53,446	△1.7
- 응급의료기금	138,068	133,141	133,141	86,649	△46,492	△34.9
- 국민연금기금	61,751,202	64,828,981	64,828,981	67,937,382	3,108,401	4.8
합 계	65,332,172	68,583,478	68,583,478	71,619,204	3,035,726	4.4

주: 1) 기금은 각각 2018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82조 8,20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조 317억원(13.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0조 7,83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4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9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32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3,930억원, 응급의료기금 2,365억원, 국민연금기금 27조 8,071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8,120,605	45,087,940	45,361,737	51,383,716	6,021,979	13.4
- 일반회계	37,635,673	44,536,213	44,810,010	50,783,385	5,973,375	13.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304	43,863	43,863	47,438	3,575	8.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8,694	319,218	319,218	349,661	30,443	9.5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2,935	188,646	188,646	203,232	14,586	7.7
기 금	24,942,584	27,426,833	27,426,833	31,436,575	4,009,742	14.6
- 국민건강증진기금	3,281,300	3,436,319	3,436,319	3,392,992	△43,327	△1.3
- 응급의료기금	223,798	232,275	232,275	236,452	4,177	1.8
- 국민연금기금	21,437,485	23,758,239	23,758,239	27,807,131	4,048,892	17.0
합 계	63,063,189	72,514,773	72,788,570	82,820,291	10,031,721	13.8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보건복지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7,152억원으로 전년 대비 439억원 (6.5%)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9년 4,723억원에서 2020년 5,002억원으로 5.9% 증가하였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1,991억원에서 2,150억원으로 8.0% 증가하였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49,960	472,273	472,273	500,218	27,945	5.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4,954	199,062	199,062	215,001	15,939	8.0
합 계	674,914	671,335	671,335	715,219	43,884	6.5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8개 회계)로 구성되며, 51조 3,837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6조 220억원(13.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9년 추경

44조 8,100억원에서 2020년 50조 7,834억원으로 13.4%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439억원에서 474억원으로 8.2% 증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3,192억원에서 3,497억원으로 9.5% 증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1,886억원에서 2,032억원으로 7.7% 증가하였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7,953,468	44,536,213	44,810,010	50,783,385	5,973,375	13.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304	43,863	43,863	47,438	3,575	8.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8,694	319,218	319,218	349,661	30,443	9.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4,076	188,646	188,646	203,232	14,586	7.7
합 계	38,449,541	45,087,940	45,361,737	51,383,716	6,021,979	13.4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137조 5,061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13조 7,436억원(11.1%)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4조 2,308억원에서 4조 2,947억원으로 1.5% 증가하였고, 응급 의료기금은 3,665억원에서 2,925억원으로 20.2% 감소, 국민연금기금은 119조 1,652억원에서 132조 9,189억원으로 11.5% 증가하였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민건강증진기금	3,751,644	4,230,752	4,230,752	4,294,738	63,986	1.5
응급의료기금	392,555	366,535	366,535	292,519	△74,016	△20.2
국민연금기금	135,012,810	119,165,219	119,165,219	132,918,864	13,753,645	11.5
합 계	139,157,009	123,762,506	123,762,506	137,506,121	13,743,615	11.1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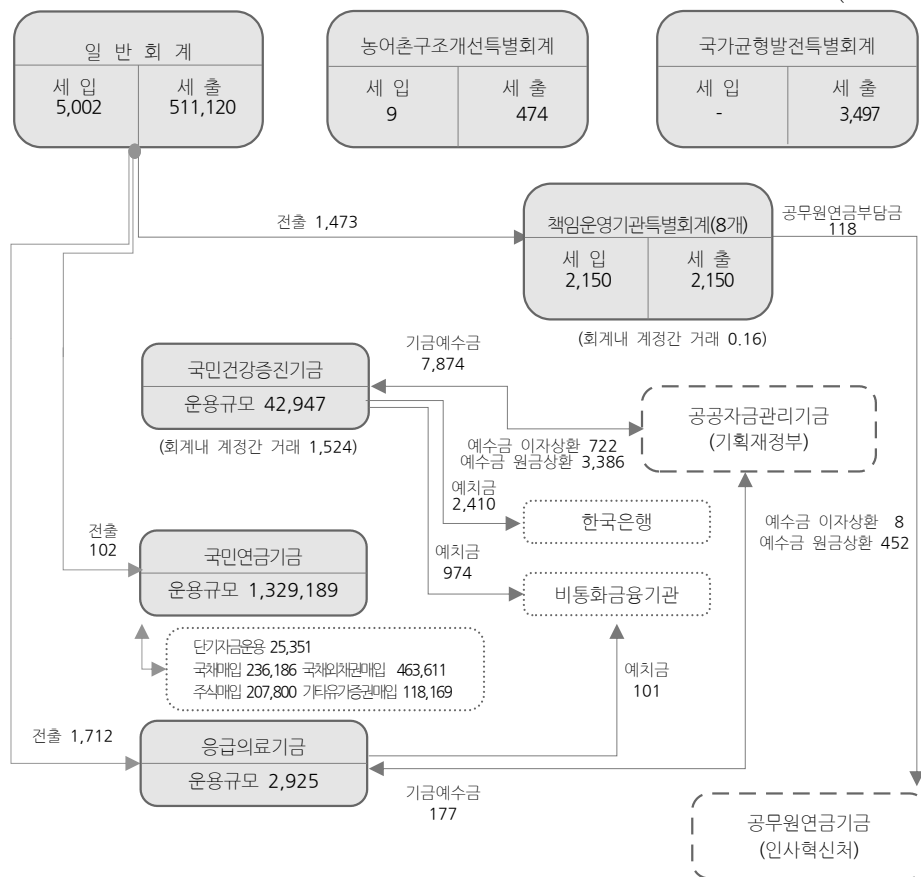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8개 책임운영특별회계에 총 1,473억원을 전출하고,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102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1,712억원을 전출한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7,874억원을 예수하고 이자 포함 4,108억원을 상환하며, 응급의료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77억원을 예수하고 이자 포함 460억원을 상환한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① 소득 분배 개선,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 위험요인 예방·관리, ③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④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예산이 확대되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저소득층 지원 예산안 중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사업의 자활장려금은 각각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부를 두 사업의 대상자로 중복 산정하였으므로 생계급여 및 자활사업에 과다편성된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약 1조원이 증액되었으나 조정계수를 통해 지원규모를 감액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 규모가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안 규모 산정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편성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0년 3월 보육제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2.2만명이 추가로 채용되어야 하나 현재 시범사업 지역에서도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원활화 방안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액 추계규모의 적정성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집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평균 급여액 증가 비율이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18개 사업, 1,13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R&D)은 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기기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은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사업 중 신규사업은 국립정신건강센터정보화사업(정보화, 손익)으로, 행정업무, 진료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국민연금기금 사업 중 신규사업은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사업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인재양성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관련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6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	30,189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R&D)	25,532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289
	한의학혁신기술개발(R&D)	7,779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R&D)	7,740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R&D)	6,450
	노인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R&D)	4,800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R&D)	4,267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R&D)	2,966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R&D)	2,950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2,640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2,500
	바이오헬스투자인프라연계형R&D사업	2,236
	치의학의료기술연구개발(R&D)	2,008
	국민참여단 사회복지 시설현황 종합조사	416
	보건복지 양성평등정책 교육홍보	1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개)	국립정신건강센터정보화사업(정보화,손익)	257
국민연금기금 (1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1,518
합 계		113,651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 국민연금 급여 지급, 다함께 돌봄 사업 등이 있다.

①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소득하위 20% 초과 4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②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었으며, ③ 국민연금 급여 지급 사업은 중기재정전망을 토대로 노령연금의 증가를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④ 다함께 돌봄 사업은 대상개소의 확대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1개)	기초연금지급	11,495,198	11,495,198	13,176,531	1,681,333	14.6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	5,972,077	5,972,077	7,082,613	1,110,536	18.6
	생계급여	3,750,801	3,761,705	4,337,925	576,220	15.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822,002	922,761	1,199,064	276,303	29.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1,035,129	1,035,129	1,327,105	291,976	28.2
	장애인활동지원	1,003,461	1,014,902	1,275,172	260,270	25.6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186,829	1,378,069	191,240	16.1
	자활사업	490,959	524,002	602,164	78,162	14.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40,943	40,943	118,906	77,963	190.4
	발달장애인 지원	42,720	42,720	85,499	42,779	100.1
	노인요양시설 확충	112,870	117,738	142,706	24,968	21.2
	긴급복지	142,176	162,587	165,628	3,041	1.9
	다함께 돌봄 사업	10,635	10,635	33,845	23,210	218.2
	장애인일자리지원	120,787	120,787	141,520	20,733	17.2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13,449	113,449	126,420	12,971	11.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9,858	9,858	21,823	11,965	121.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6,393	9,542	17,764	8,222	86.2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21,263	21,263	28,076	6,813	32.0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5,968	5,968	12,053	6,085	102.0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934	934	5,254	4,320	462.5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740	4,740	8,646	3,906	82.4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1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6,828	276,828	311,535	34,707	12.5
국민건강 증진기금 (6개)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72,900	72,900	97,436	24,536	33.7
	국가암관리	52,996	52,996	75,481	22,485	42.4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29,293	29,293	43,750	14,457	49.4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3,500	3,500	16,500	13,000	371.4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368	4,368	8,499	4,131	94.6
	재활병원건립	4,006	4,006	7,000	2,994	74.7
국민연금 기금 (1개)	국민연금급여지급	23,019,300	23,019,300	27,003,400	3,984,100	17.3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보건복지부

1

저소득층 지원 예산안 분석

2020년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은 국가재정전략회의(2019.5.16)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1분위 중심 저소득층 소득개선 및 생계비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발적 근로유인 강화를 위해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30% 신규도입(+2.7만 가구), ②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6만 가구), ③ 아들(30%)과 결혼한 딸(15%)의 부양비율을 10%로 하향(+0.6만 가구), ④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현실화¹⁾로 수급요건 완화(+0.5만 가구), ⑤ 2019년 추경예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을 인하(+2.5만 가구) 등이며, 총 7.9만 가구가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보장성 강화]

세부사업	생계급여				생계·의료급여
주요내용	근로소득공제 30% 신설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10%로 하향 조정	수급자 재산요건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을 인하
가구수	+2.7만 가구	+1.6만 가구	+0.6만 가구	+0.5만 가구	+2.5만 가구
소요예산	2,610억원	661억원	371억원	302억원	1,787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 중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은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한 제도를 2020년도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주거용재산한도 및 기본재산공제가 상향조정되었다.

부터 근로연령층(25~64세) 전체에 대해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중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액이 상향되고 약 2.7만 가구가 신규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간 인원 중복 산정

가. 현 황

생계급여 사업²⁾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62억 2,000만원(15.3%)이 증액된 4조 3,37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자활장려금 사업³⁾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시 생계급여가 자활급여만큼 100% 차감됨에 따른 근로 유인 감소 효과를 완화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활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 자활장려금 예산안은 전년대비 100억 3,400만원(△25.8%)이 감액된 288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생계급여 사업 및 자활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계급여	3,702,940	3,750,801	3,761,705	4,337,925	576,220	15.3
자활사업	368,775	490,959	524,002	602,164	78,162	14.9
자활장려금	0	38,837	38,837	28,803	△10,034	△25.8

자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사업의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인정액⁴⁾ 산정 시 근로소득 증가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감액되는 것을

2) 코드: 일반회계 1131-300

3) 코드: 일반회계 1137-300의 내역사업

4)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완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의 약 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인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⁵⁾ 생계급여와 별도로 자활급여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자활급여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0%)을 초과하지만 자활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에서 자활급여의 70%를 뺀 금액만큼 지급되고, 자활급여의 70%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자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9년에는 자활근로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진입형을 자활장려금 대상으로 하고, 근로유지형(일 5시간 근로)과 자활근로 배치 전 개인별 맞춤형 경로설정을 위한 Gateway 과정⁶⁾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019년 1~8월 평균 수급인원(3,210명)이 계획(18,653명) 대비 17.4%로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2020년부터 그 대상을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⁷⁾⁸⁾

2020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2019년 1~8월 자활장려금 수급건수 평균

5) 자활장려금: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자활급여 70%

[자활근로 유형별 월 급여]

(단위: 원)

	시장진입형(1일 8시간)	사회서비스형(1일 8시간)	근로유지형(1일 5시간)
2019년	1,285,440	1,112,540	623,220
2020년	1,354,860	1,173,120	645,060

주: 해당 금액은 실비(4,000원/일)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6) Gateway 과정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으로, 약 2개월 이내(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 동안 실시된다. Gateway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형 급여를 지급한다.

7) 2019년 기준으로 시장진입형은 자활급여 128만원, 소득인정액(자활급여의 70%)은 90만원으로, 2인가구 기준(87만원)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고, 3인가구 기준(113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23만원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2019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도 자활급여 111만원, 소득인정액(자활급여의 70%)은 78만원으로, 2인 가구 기준(87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9만원 있을 경우 지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도 일부만 자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8) 2019년 8월 자활장려금 예산 388억원 중 55억원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세부사업)으로 내역변경하였다.

[2019년 자활장려금 월별 지급인원 및 지급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지급 인원수(명)	2,731	2,628	3,363	3,656	3,146	3,207	3,607	3,338
1인당 평균 지급액(원)	245,243	216,967	219,394	209,401	208,931	206,899	212,779	202,697

자료: 보건복지부

3,242명과 생계급여 수급자 중 Gateway과정 3,515명, 근로유지형 6,306명 등 총 13,164명에 대해 월평균 222,824원씩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2020년도 자활장려금 대상인원 산출 내역]

- 자활장려금 지급 예상인원 : 13,164명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 등 : 3,242명*
 - * '19년 1~8월 평균 자활장려금 지급건수 추계치
 - Gateway 대상자 및 근로유지형 대상자 : 9,821명**
 - ** Gateway 3,515명 + 근로유지형 6,306명('19년 7월 소득 기준 추계치)

주: 예산 편성 시점과 분석시점(9월) 차이로 101명 인원 차이가 발생함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대상 인원이 중복 계상 되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생계급여 사업의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장려금 제도와 취지 및 산출방법이 유사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제도는 유사한 취지이므로 중복 적용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을 적용하되, 노인·장애인·24세 이하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⁹⁾

그런데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을 2019년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진입형에서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Gateway)로 확대하고,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지급대상도 모든 생계급여 수급 연령

9) 2019년 자활근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대학생, 24세 이하에 해당하면 자활장려금 대비 공제율이 더 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2019년 근로소득공제 주요 대상별 내용]

24세 이하	74세 이하 노인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40만원 선공제 +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30%	20만원 선공제 +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20만원 선공제 +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에 대해 30% 공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 2020년도 예산안에 자활근로의 Gateway, 근로유지형 참여인원을 대상인원으로 중복 계상하였다.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활동 시 유형별 공제제도 적용 예산 편성내역]

구분			2019년		2020년(안)	
			노인, 장애인, 24세 이하	25~64세	노인, 장애인, 24세 이하	25~64세
재정 지원 일자리 등에 따른 소득	① 장애인일자리 등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② 자활 근로	Gateway, 근로유지형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민간부문 일자리 소득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주: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중복편성된 부분을 굵은 선 박스로 표시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활장려금에 신규로 반영된 Gateway 단계 및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일부는 노인·장애인·24세 이하에 해당되어 이미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므로 자활장려금 신규 수급 예상인원 산출 시 제외되어야 하나 중복 계상되었다. 또한, 노인·장애인·24세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로 자활장려금 또는 근로소득공제 수급 자격이 발생하는 Gateway 단계 및 근로유지형 참여인원을 근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에 중복 계상하였다. 즉, 자활장려금에 신규로 반영한 Gateway(3,515명) 및 근로유지형(6,306명) 대상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중복 계상됨에 따라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¹⁰⁾¹¹⁾

근로소득 공제 대상 중복 산정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및

10)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Gateway 대상자와 근로유지형 대상자의 총 인원은 약 12,000명으로, 이 중 소득재산기준 초과자를 제외하고 9,821명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Gateway 대상자와 근로유지형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24세 이하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대상자 산정시 제외하여야 하고, 25~64세 연령의 Gateway 대상자와 근로유지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11) 이에 대해 정부는 대상자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에 중복 계상된 부분이 있으나, 2020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대상자 증가 및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로 인한 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2019년 수급자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출하였으므로, 중복 계상으로 인한 인원 초과분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활장려금 확대 결정 시 두 제도 간 중복 적용 인원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대상 인원을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활사업의 자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는 계획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의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¹²⁾에 규정된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유사 제도 간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2019년 자활장려금 도입 후 1년 만에 2020년도 예산안에 따라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확대로 자활장려금이 없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2015년까지 적용되고 폐지된 자활장려금의 2019년 재도입 논의 시 근로소득공제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¹³⁾

따라서 정부는 2020년 자활장려금 및 근로소득공제에 중복 편성된 자활근로 참여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두 제도의 통합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 하도록 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제도 도입 및 확대 논의 시 유사 제도 간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위소득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생계급여 사업¹⁴⁾은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62억 2,000만원(15.3%)이 증액된 4조 3,37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1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2020년 예산안의 경우,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를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 모두 최소 30%를 적용함에 따라 공제율이 30%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동일하거나 노인, 장애인, 24세 이하에 비해서는 낮은 공제율인 자활장려금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

14) 코드: 일반회계 1131-300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¹⁵⁾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63억 6,000만원(8.8%)이 증액된 7조 3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생계급여	3,702,940	3,750,801	3,761,705	4,337,925	576,220	15.3
의료급여경상보조	5,606,641	6,391,530	6,437,402	7,003,762	566,360	8.8

자료: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경우 수급자 선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¹⁶⁾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나. 분석의견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9,174원으로,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출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다.

15) 코드: 일반회계 1132-302

16)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20년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0년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주거급여 (중위 45%)	'19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0년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20년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15~2017년과 2018년, 2019년, 2020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2015~2017년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전년 실제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실제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였고, 2018년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1.16%)을 반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2.09%)을 적용하였다. 2020년에는 최근 3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1.66%)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4.21%)의 중간값(2.94%)을 적용하였다.

[2017~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2017년 기준 중위소득 ¹⁾ (2016년 결정)	2018년 기준 중위소득 (2017년 결정)	2019년 기준 중위소득 (2018년 결정)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19년 결정)
산출 방식	'15년 실제 중 위소득 (4,189,755원) * [중위소득 3년 평균증가율 (3.26%)] ²	'17년 기준 중 위소득 (4,467,380원) * 전년도 중위소 득 평균증가율 (16년, 1.16%)	'18년 기준 중위 소득(4,519,202원) * 최근 3년간 중 위소득 평균증가 율('15년~'17년, 2.09%)	'19년 기준 중위소득 (4,613,536원) * 가계동 향 '16~'18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1.66%과 가 계금융복지조사 '15~'17 년 중위소득 평균증가율 4.21%의 평균 값
전년대비 증가율	1.73%	1.16%	2.09%	2.94%
기준 중위소득	4,467,380원	4,519,202원	4,613,536원	4,749,174원

주: 1) 2015~2017년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이 동일하여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을 예시로 작성

1. '15년 기준 중위소득은 4,222,533원, '16년 기준 중위소득은 4,391,434원으로 '15년 대비 4% 인상

2.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시 산출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저소득층 소득 악화, 가계금융복지조사로의 이행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⁷⁾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급여 지급액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측면에서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명확한 기준 없이 매년 변경하는 것은 산출기준을 불명확하게 하고 일관성을 저해하여 지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하여 2019년 기준 총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¹⁸⁾의 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일관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17) 참고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통계청의 중위소득 산출 자료원 변경(가계동향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고려하여, 「제1차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을 위한 TF(단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2019년 1~5월 운영된 「제2차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을 위한 TF(단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18) 보건복지부 37개, 여성가족부 12개, 교육부 8개, 고용노동부 6개, 국가보훈처 5개, 산림청 3개, 법무부 2개, 국토교통부 1개, 문화체육관광부 1개, 해양수산부 1개, 행정안전부 1개, 환경부 1개 사업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수급자 기준을 정하는 주요사업(예시)]

(단위 : 백만원)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020 예산안	수급자 선정 기준
보건 복지부	생계급여	4,337,925	기준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7,003,762	기준중위소득의 40%
	긴급복지	165,628	기준중위소득의 75%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07,091	기준중위소득의 50%
	자활사업	602,164	기준중위소득의 50%
	장애수당(기초)	76,589	기준중위소득의 40%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243,993	기준중위소득의 15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54,412	기준중위소득의 52%
교육부	국가장학금	4,001,776	기준중위소득의 200%
	교육급여	101,649	기준중위소득의 50%
	평생교육바우처	3,625	기준중위소득의 50%
고용 노동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64,198	기준중위소득의 120%
	취업성공패키지	244,673	기준중위소득의 60%(저소득층) 또는 100%(중장년)

자료: 보건복지부 등 취합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⁹⁾

19)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9.7.30)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였다.

2013년 3월 만 0~5세 대상 무상보육 도입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¹⁾ 영아의 장시간 시설이용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²⁾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지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되었다.

맞춤형 보육 제도는 맞벌이 가구에 한해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여 일 12시간(7시30분~19시30분)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가구는 ‘맞춤반’으로서 일 6시간(9시~15시) 이용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늦은 시간까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³⁾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체계 개편”이 2019년 4월 「영유아보육법(’20.3.시행)」 개정을 통해 추진되었다.⁴⁾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고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만 0~2세(영아반)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1년 39.9%, 2013년 47.0%, 2015년 48.2%, 2017년 52.6%로, 무상보육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영아의 평균 이용시간은 2015년 기준 7시간 11분으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을 초과하였다.

2) 어린이집을 짧게 이용하되 보육료는 동일한 외벌이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선호하는 문제, 어린이집 보육제도 이용이 불필요한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으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등도 함께 발생하였다.

3) 어린이집을 이용한 수혜자 만족도도 2016년 83.7%, 2017년 83.3%, 2018년 82.0% 수준으로 목표(86%)대비 저조하게 나타났다.

4)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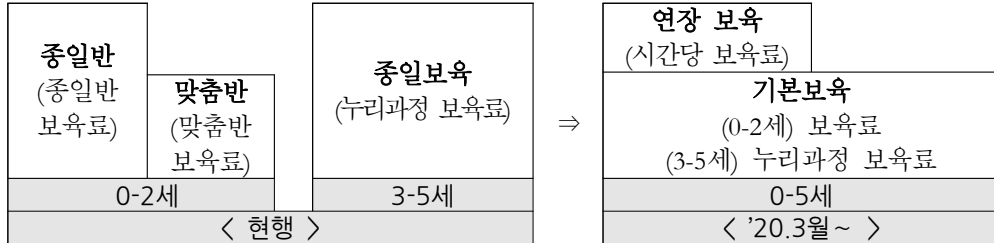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2020년 3월 보육제도 개편]



- 주 1. 전체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이용 전 연령(0~5세) 대상
 2. 보육시간을 기본보육,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3.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료 지원 체계는 동일하게 유지함. 즉,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부모 보육료에 시설보육료를 합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인건비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부모보육료만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변화가 있다. 영유아보육료의 경우, 만 0~2세에 대해 기존의 종일반(맞벌이 등)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만 0~5세 모두 보육 시간대별로 기본보육 시간(오전 7시30분~16시)에 대해서 오전 7시30분부터 17시까지 기본보육료⁵⁾를 지급하고,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분)⁶⁾에 대해서 17시부터 연장보육료를 지급한다.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장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연장반 구성인원 기준⁷⁾을 충족하면 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 5) 기본보육시간(오전7시부터~16시)에 대한 보육료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은 기존 보육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0%, 맞춤반 대비 18.2%) 인상한 형태이고, 2020년 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종일반·맞춤반 구분 없이 2020년 1~2월의 종일반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기본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를 7시부터 16시까지가 아니라 등·하원 및 행정업무 등을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을 포함하여 17시까지로 산정하였다.

[2020년 기본보육시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체계]

(단위: 천원/월)

구분	2020.1~2월				2020.3월~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인건비 미지원 시설
	종일	맞춤	종일	맞춤		
0세반	468	365	968	865	468	968
1세반	412	320	684	592	412	684
2세반	341	266	525	450	341	525

자료: 보건복지부

- 6) 보육교사 선생님은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4시간 근무 및 3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는 그날 아이들의 상황에 대한 인수인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이 이루어진다. 다만,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아동 인원에 맞춰 30분 단위로 지원된다.

2-1.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체계적 홍보 필요

가. 현 황

영유아보육료 지원⁸⁾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9,200만원 증가한 3조 4,055억 7,400만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보육제도 개편(2020년 3월 예정)과 관련하여 ‘연장보육료 지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제도 개편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영유아보육료 지원	3,384,483	3,405,282	3,405,282	3,405,574	292	0.0
연장보육료 지원	0	0	0	63,935	63,935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시간, 하원시간의 변화, 기본보육외 연장보육 서비스 신청절차 등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홍보 및 사전안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 0~2세의 연장보육(16시~19시 30분) 이용 자격을 기존 종일반에 대해 부여하되, 맞춤반 아동이 긴급하게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종일반 아동(맞벌이 가정 등)에 대해서는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자격이 주어지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연장보육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기존 맞춤반 이용가정에 대해서는 기본보육 이용 자격이 주어진다.

7) 연장반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 장애아, 12개월 미만 3명을 각각 1개 반 구성 기준으로 한다.

8) 코드: 일반회계 3133-331

[보육체계 개편 기본 운영 모형안]

7:30		9:00		16:00		17:00		19:30	
과정	등원지도	기본보육				연장보육			
이용자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아동					연장보육 신청 아동 ※0~2세는 자격 필요			
반 구성	통합반	연령별 반 구성				연장반(연령 혼합)			
교사	당번교사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육료	보육료					시간당 보육료			

자료: 보건복지부

즉, 제도 개편에 따라 맞춤반에 대한 긴급보육바우처(15시간/월)는 폐지되고 기존 맞춤반 이용 가정에 연장보육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맞춤반 가정도 필요에 따라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보육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 맞춤반과 종일반의 구분기준이 연장보육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이용 시 신청하여 이용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어린이집 이용가정 사전안내문 및 홍보 등을 통해 정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보육제도 개편 후 기존 종일반 및 맞춤반 아동의 변화 비교]

	기존 종일반(맞벌이 가정 등)	기존 맞춤반
기본보육	7시반~16시	좌동
하원시간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16~17시 하원 필요	좌동
연장보육	연장보육반을 신청한 아동은 17~19시반 하원	연장보육반에 편성되지 않음 ※ 단, 긴급한 사유로 연장보육 필요 시 이용가능하며 자부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육제도 개편에 따른 기본보육시간(07:30~16:00) 및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되는 하원시각의 변화, 기본보육 외 연장보육 서비스 신청 절차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보육제도 개편 제도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 교육, 어린이집 이용가정에 대한 사전안내문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⁹⁾은 국공립·법인 및 취약보육 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12억 4,000만원(16.1%) 증가한 1조 3,78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768억 6,100만원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 84억 3,800만원이 각각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0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019,379	1,186,829	1,186,829	1,378,069	191,240	16.1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0	0	0	76,861	76,861	순증
연장보육 담임교사 수당	0	0	0	8,438	8,438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연장보육 전담교사란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연장보육시간(16시~19시30분)에 연장반을 전담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연장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영아반의 경우 1:5, 유아반의 경우 1:15인 경우 모든 어린이집 유형에 대해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채용인원 ¹⁾	근무시간	1인당 월 기준		총액	
		월 급여액	연장교사 수당 ²⁾	급여액	수당
2.2만명	4시간/일	100.2만원	11만원	76,861백만원	8,438백만원

주: 1) 연장보육교사 신규채용은 1.2만명이고, 기존 4만명의 보조교사 채용계획 중 보조교사 1만명을 연장보육전담교사로 운영할 계획을 포함하여 2.2만명임

2) 연장교사 수당은 일 4시간 근무 기준이며, 기본보육시간의 담임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22만원) 대비 1/2 수준

자료: 보건복지부

9) 코드: 일반회계 3140-404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2.2만명)를 2020년 1~2월의 기존 보조교사 1만명과 1.2만명 신규채용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2019년과 동일하게 보조교사¹⁰⁾ 4만명을 2020년도 1~2월에 채용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이 중 3만명만 보조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나머지 1만명은 순차적으로 연장보육전담교사로 채용된다. 3월 7,000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 및 6월 7,000명, 9월 8,000명 추가 채용을 통해 3~5월 7,000명, 6~8월 14,000명, 9~12월 22,000명의 연장보육전담교사가 배치될 예정이다.¹¹⁾

[2020년도 예산안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예산안 세부내역]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 30,000명 × 1,002천원 × 12개월 × 50.8% = 183,246백만원 · 10,000명 × 1,002천원 × 2개월 × 50.8% = 10,180백만원	· 7,000명 × 1,002천원 × 10개월 × 50.8% = 35,631백만원 · 7,000명 × 1,002천원 × 7개월 × 50.8% = 24,942백만원 · 8,000명 × 1,002천원 × 4개월 × 50.8% = 16,288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시험사업(19.5~20.2) 과정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장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총 2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20년도 예산안은 3월 7,000명, 6월 7,000명, 9월 8,000명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편성하였다.

10)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용된다.

11)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를 1~2월 4만명, 3~12월 3만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전년도 보조교사 근로 계약이 다음연도 2월까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2월까지 2019년도와 동일하게 보조교사 4만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고 3월부터 1만명을 줄이는 방식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조교사		30,000명											
		10,000명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차			7,000명									
	2차						7,000명						
	3차									8,000명			
	합계			← 7,000명 →			← 14,000명 →			← 22,000명 →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새 학기 이후 점차 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 반면 제도운영에 필요한 연장보육전담교사 22,000명이 9월에 채용이 완료되도록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20년도 3월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 필요한력의 채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모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4개 시·군·구(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102개 어린이집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보면, 연장보육 전담교사 186명 중 34.9%인 65명이 전담교사가 아닌 기존 주간 보육교사이면서 연장보육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장보육 전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A=B+C)	신규채용 (B)	기존교사 겸직(C=D+E+F)				기존교사 겸직비율
			소계 (C)	담임교사 (D)	시간연장 (E)	보조교사 (F)	
전체	186	121	65	16	27	22	34.9
서울 동작	50	33	17	3	9	5	34.0
부산 동래	41	33	8	1	1	6	19.5
전남 여수	45	37	8	-	6	2	17.8
경기 양평	50	18	32	12	11	9	64.0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더하여, 2019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채용실적을 보면, 보조교사의 경우 6월까지 25,000명, 7~12월은 15,000명을 더하여 40,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8월

기준으로 26,394명으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대체교사의 경우 2,736명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19년 8월 기준 2,353명 수준이다.

[2019년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목표인원	채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보조교사	40,000 ¹⁾	22,080	20,611	23,895	25,068	25,445	25,479	25,477	26,394
대체교사	2,736	1,526	1,559	1,735	2,007	2,141	2,243	2,315	2,353

주 1) 보조교사의 경우 6월까지의 25,000명, 7~12월은 40,000명 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수급 현황을 고려하면, 2019년 대비 추가 채용인원인 1.2만명(연장보육 전담교사)은 근무시간대(15시~19시30분) 및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담교사 모집이 안 되었을 때 기존 주간 보육교사가 연장보육 교사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① 농어촌 지역인 경우, ② 다수 연장반이 있는 경우로서, 신규채용, 보조교사 겸직, 시간 연장 교사 활용을 해도 추가적인 전담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겸직할 수 있다고 서술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우려가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연장반 교사 추가 채용 외에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채용(50,309명 → 56,369명, +6,060명), 대체교사 증원(2,736명 → 3,436명, +700명),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교사(3,360 → 3,398명, +38명) 및 장애아 통합교사(1,496명 → 1,727명, +231명), 시간제보육 지원(+207명), 다함께 돌봄 사업의 돌봄선생님¹⁾(394명 → 1,494명, +1,100명) 추가채용 인원 등 약 8,300명 이상의 보육교사 추가 채용이 필요하므로 신규 보육교사 양성, 이·퇴직 교사 인력의 재투입, 미취업 보육교사에 대한 홍보 등 인력수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보육제도 개편에 따라 보육교사 추가채용인원이 증가하고, 보육제도 개편 시범사업 시 일부 지역은 목표인원만큼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 확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돌봄선생님으로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가능하므로 보육교사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육교사로 증원될 가능성이 있는 전체인원을 산출하기 위해 함께 서술하였다.

가. 현 황

기초연금 지급¹⁾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6,813억 3,300만원(14.6%)이 증액된 13조 1,76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고보조율은 40~90%이다.

장애인연금²⁾ 사업은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64억 4,600만원(9.2%)이 증액된 7,86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다.

[2020년도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연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초연금 지급	9,243,965	11,495,198	11,495,198	13,176,531	1,681,333	14.6
장애인연금	613,233	719,735	719,735	786,181	66,446	9.2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첫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131-300

2) 코드: 일반회계 1531-305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기초연금의 경우 2019년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였고(19.4~), 2020년 소득 하위 20% 초과 40%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으로 기초급여액을 인상하였고(19.4~),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2021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 단계적 확대 계획]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9년	소득 하위 2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	소득 하위 20% 초과 4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021년	소득 하위 40% 초과 7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전체로 확대)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자료: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을 바탕으로 재정리

이에 따라 2020년 기초연금 예산안을 보면, 소득 하위 20% 초과 40% 이하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되었고, 2020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보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물가상승률 인상 반영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2018년 예산안부터 2020년 예산안 심사 시까지 기초연금 인상내용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근거 법률인 「기초연금법」 심사 및 개정 전에 예산안에 편성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 및 2019년 예산안 심사 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근거 법률인 「기초연금법」 개정 없이 의무지출 예산이 확정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인상액 및 시기 조정에 관한 개정안]

법률안	의안번호	주요내용	비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4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 변경(4월→1월)	위원회 계류 중
	2019970	소득하위 20% 초과 40% 이하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64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변경(4월→1월)	
	2021538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내용을 재정리

그러나 의무지출 사업은 지출대상과 지출금액이 법령에서 확정되는 사업으로, 지출대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변경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 법률 제·개정 → 예산 심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무지출 사업의 본래적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연금 사업의 경우 의무지출 사업임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논의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고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도입 첫 해인 2014년 7월 20만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상승되다가 2018년 9월 25만원으로 상향되고, 2019년 4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20년 예산안에 소득하위 20% 초과 40% 이하에 대해 30만원 인상분이 반영되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추이]

(단위: 원)

'147~'153	'154~'163	'164~'173	'174~'183	'184~'188	'189~'193	'19.4~	'20.1~(안)
200,000	202,600	204,010	206,050	209,960	250,000	(하위 20%) 300,000 (20~70%) 253,750	(하위 40%) 300,000 (40~70%) 257,560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국비 및 지방비 재정 부담은 2015년 10조 280억원에서 2020년 예산안에서는 16조 8,080억원으로 5년간 6조 7,800억원 증가하였고, 이 중 지방비 부담은 2015년 2조 4,456억원에서 2020년(안) 3조 6,315억원으로 1조 1,859억원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방비 부담수준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9월 기초연금액 25만원으로 인상(+5만원)된 이후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안)까지 전년 대비 지방비 증가액은 각각 2,495억원, 5,263억원, 3,858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국비 및 지방비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연평균 증가율
합계(A+B)	100,280	103,091	105,660	118,423	147,409	168,080	10.9
국비(A)	75,824	78,692	80,961	91,229	114,952	131,765	11.7
지방비(B)	24,456	24,399	24,699	27,194	32,457	36,315	8.2
국고보조율	75.0	75.6	76.3	76.6	77.0	78.0	

주: 국비는 기초연금지급 예산 총액(자치단체경상보조비 + 제도운영비), 지방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금액, 국비 및 지방비 모두 예산액 기준, 국고보조율은 예산편성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더하여, 기준연금액 단계적 인상 계획³⁾에 따르면, 2021년에는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므로 국비 및 지방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18.7.)에 반영되어 있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기초연금 국비 부담분은 매년 10.4% 수준으로 증가하고, 지방비는 8.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비 부담은 2019년 3조 2,457억원, 2020년 3조 6,315억원에서 2023년 4조 8,051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이후 약 3년 만에 1조원 이상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재정부담 전망(2019~2023)]

(단위: 억원, %)

연도	2019	2020(안)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합계(A+B)	147,409	168,080	191,920	204,685	218,645	10.1
국비(A)	114,952	131,765	149,746	159,704	170,594	10.4
지방비(B)	32,457	36,315	42,174	44,981	48,051	8.8
국고보조율	77.0	78.0	78.0	78.0	78.0	

- 주 1. 국비는 기초연금지급 예산 총액(자치단체경상보조비+제도운영비), 지방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 따른 지방비 매칭 금액임
 2. 2020년은 정부안, 2021~2023년은 중기재정계획(2019~202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 국고보조율은 '19년 77%, '20년 78%를 적용하고, '21년 이후는 '20년의 78%가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비 부담 증가의 문제는 기초연금수급 인원이 많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40~90%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 국고보조율은 재정자주도 90% 이상인 경우 40~60%, 재정자주도 80~90% 미만인 경우 50~70%,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경우 70~90%로 구분되는데, 2019년 및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재정자주도 8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국고보조율은 70~90%만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⁴⁾ 또한, 노인인구 비율은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기초연금수급 노인인구 비율이 다른 점,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많지만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재정지원을 적게 받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⁵⁾

4) 예를 들어 재정자주도가 30%인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가 79%인 자치단체의 노인인구비율이 동일할 경우 국고보조율이 동일하다.

5) 자치단체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고령화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인 자치단체가 2018년 86개에서 2019년 71개, 2020년 65개

[2019~2020년 자치단체별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현황]

(단위: %, 개)

구 분		노인인구 비율							
		2019년				2020년(안)			
		계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계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재 정 자 주 도	90% 이상	0	40%	50%	60%	0	40%	50%	60%
	80~90% 미만	0	50%	60%	70%	0	50%	60%	70%
	80% 미만	228	70%(71)	80%(65)	90%(92)	228	70%(65)	80%(66)	90%(97)
	자치단체 수 합계	228	71	65	92	228	65	66	97

주: ()안의 수치는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
자료: 보건복지부

지방비 부담 가중과 관련하여, 2016년 및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시 “보건복지부는 재정자주도의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향후 기초연금으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 기준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개편방안 등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로 감소하고, 노인인구비율 14~20%인 자치단체가 2018년 53개에서 2019년 65개, 2020년 66개로 증가하며, 노인인구비율 20% 이상인 자치단체가 2018년 89개에서 2019년 92개, 2020년 97개로 증가하였다.

가. 현 황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¹⁾은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1조 1,105억 3,600만원(18.6%) 증액된 7조 826억 1,3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전년대비 209억 9,000만원(1.1%) 감액된 1조 8,800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건강보험가입자 총 지원금은 전년대비 1조 895억 증액된 8조 9,627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회계)	5,200,109	5,972,077	5,972,077	7,082,613	1,110,536	18.6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80,902	1,901,082	1,901,082	1,880,092	△20,990	△1.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2)에 따라 국가는 일반회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예상 수입액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4932-300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②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① 법 제99조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50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³⁾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 이내)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 규모가 증가해 왔으나 2018년 당기수지가 적자(1,778억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누적수지는 2017년 20조 7,733억원에서 2018년 20조 5,95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상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매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상 건강보험 재정전망]

(단위: 억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수입(A)	579,990	621,159	676,612	739,725	807,305	869,823	934,545
총지출(B)	572,913	622,937	708,248	767,000	817,984	886,700	943,226
당기수지(A-B)	7,077	△1,778	△31,636	△27,275	△10,679	△16,877	△8,681
누적수지	207,733	205,955	174,319	147,044	136,365	119,488	110,807

주: 2017~2018년은 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안 규모 산정 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편성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2020년 예산 규모(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8조 9,627억 500만원으로 산출되나, 1조 8,800억 9,200만원이 적게 반영되어 7조 826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보험료 수입액에 보험료율 인상률⁴⁾, 가입자 수 증

3)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4)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3.49%,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은 3.2%이나 실제 보험료 예상 수입액 추계시 2019년 3.49%, 2020년 3.49%로 반영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완료 시점은 9월 3일이며,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이보다 앞선 2019년 8월 22일에 결정되었으므로 2020년 보험료율 인상률 3.2%가 아닌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 3.49%를 중복 반영한 점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결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어져 부득

가을, 보수월액 증가율을 곱하고⁵⁾, 해당 금액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을 반영한 보험료 감소 예상금액⁶⁾을 감액 조정하여 2020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63조 9,260억원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2020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원비율 14%를 반영하면 8조 9,627억 500만원이 산출되나, 1조 8,800억 9,200만원이 조정된 7조 826억 1,300만원이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편성되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2020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 2020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액(70,826억원) = 2020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639,260억원) × 14% + 과징금 예상 수입(261억원) × 50% - 지원규모 조정(18,801억원)
- 2020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639,260억원) = 2018년도 보험료 수입(539,544억원, 부과체계 개편 효과 보정치) ×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349%)² × 2017, 2018년 연평균 가입자 수 증가율(314%)² × 2017, 2018년 연평균 보수월액 증가율(258%)² + 부과체계 개편 영향(연 △7,509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그 결과,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규모는 전년대비 1조 1,105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지원율은 2019년(10.3%) 대비 0.8%p 상승한 11.1%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원율 14%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지원율은 2016년 11.0%, 2017년 9.8% 등 매년 1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2020년 1조 8,801억원으로, 2019년 1조 9,011억원 등 매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법정지원율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는 미달하고 지원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정한

이하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 2019년 예산안 편성과 달리 2020년 예산안 편성시 다년도(2017년, 2018년) 증가율의 산술평균치를 활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가입자 수 증가율(2016년~2018년 각 2.5%, 2.6%, 3.7%)과 보수월액 증가율(2016년~2018년 각 3.1%, 2.8%, 2.4%)의 연도별 편차가 커 다년도 수치를 반영하였다는 입장으로 그 취지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보험료예상수입액 및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모 산정 시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 수입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료 수입이 7,5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2020년도 예산안 산출시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인한 감소액으로 7,509억원을 반영하였다.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년 지원되고 있다.⁷⁾

[2016년~2020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예산)	2020 (예산안)
계 (A+B)	지원액	70,974	67,839	70,802	78,732	89,627
	지원율	15.0	13.6	13.2	13.6	14.0
일반회계 (A)	지원액	52,060	48,828	52,001	59,721	70,826
	지원율	11.0	9.8	9.7	10.3	11.1
국민건강증진 기금 (B)	지원액	18,914	19,011	18,801	19,011	18,801
	지원율	4.0	3.8	3.5	3.3	2.9

주: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매년 법정지원율인 6%에 미달하고 있기는 하나,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 여건 및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액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지원 규모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데, 지원 규모 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는 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52억원, 2020년 1조 8,801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2020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원규모 조정 금액]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규모 조정 금액	△7,040	△13,485	△22,739	△21,352	△18,801

자료: 보건복지부

7)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되, 해당 지원금액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부담금 수입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예산)	2020(예산안)
담배부담금 수입	29,630	29,690	30,666	29,247	28,924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의 이러한 지원 방식은 지원 규모가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하여 2017년~2022년 6년간 30.6조원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정이며⁸⁾, 2018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 지원시 이러한 제반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및 최근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추이 등을 고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안 규모 산정 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이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8)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장성 강화대책(A)	306,164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
제1차 종합계획(B)	64,569	-	-	3,437	8,310	10,245	18,536	24,041
(A)+(B)	415,842	-	-	54,027	69,232	81,439	99,977	111,167

자료: 보건복지부

가. 현 황

국민연금 급여지급¹⁾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조 9,841억원(17.3%) 증가한 27조 34억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민연금 급여지급	20,752,684	23,019,300	23,019,300	27,003,440	3,984,140	17.3
- 노령연금	17,384,044	19,090,600	19,090,600	22,881,541	3,790,941	19.9
- 장애연금	405,868	438,600	438,600	433,500	△5,100	△1.2
- 유족연금	2,057,577	2,318,400	2,318,400	2,517,699	199,299	8.6
- 반환일시금	905,195	1,171,700	1,171,700	1,170,700	△1,000	△0.1

자료: 보건복지부

급여 항목별로 보면, 노령연금 예산안은 전년대비 3조 7,909억원(19.9%) 증가한 22조 8,815억원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유족연금은 전년대비 1,993억원(8.6%) 증가한 2조 5,177억원 규모이다. 한편, 장애연금 예산안은 전년대비 5,100억원(1.2%) 감소하였으며 반환일시금도 전년대비 10억원(0.1%)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국민연금기금 7631-401

나. 분석의견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액 추계규모의 적정성을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집행 실적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²⁾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³⁾

그러나 2014~2017년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액을 중기재정전망 보다 과다 산정함에 따라 불용액이 2014년 8,015억원, 2015년 1조 4,035억원, 2016년 1조 4,806억원, 2017년 4,158억원 규모로 발생하였다.

[2020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A)	중기재정 전망(B)	집행액(C)	중기재정 전망 대비 계획액 (A-B)	불용액 (A-C)	중기재정 전망 대비 집행액 (B-C)
2014	14,581,400	14,098,500	13,779,943	482,900	801,457	318,557
2015	16,587,534	16,556,000	15,184,010	31,534	1,403,524	1,371,990
2016	18,548,797	17,669,500	17,068,159	879,297	1,480,638	601,341
2017	19,499,700	18,579,500	19,083,886	920,200	415,814	△504,386
2018	21,177,900	21,177,900	20,752,684	0	425,216	425,216
2019	23,019,300	23,289,300	22,818,100	△270,000	201,200	471,200
2020	27,003,440	26,290,500	-	712,940	-	-

주: 2019년 집행액, 불용액, 중기재정 전망 대비 집행액은 보건복지부 예상치로, 2019년 집행전망에서 최근 5개월(2~7월) 평균 증가율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국민연금연구원이 임금, 물가상승률, 사망률 등을 전망하여 향후 5년간 급여 지출액 등을 추계한다.

3)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9. 6.)에 따르면 중기재정전망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목적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2018년에는 중기재정전망 수준으로 산정하였고 2019년에는 중기재정전망보다 하향 전망하였다. 중기재정전망과 같은 수준 또는 하향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2018년 4,25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19년에는 2~7월 증가율을 연말까지 적용 시 2,012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안은 중기재정전망 보다 2.7% 증가한 규모(7,129억원)로 계획되었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평균급여액(428,029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414,693원) 보다 3.2% 높은 수준으로 계획하고, 노령연금 수급자, 유족연금·장애연금·장애일시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수급자 및 월 평균급여액에 대해서는 중기재정전망과 동일한 규모를 적용하였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비교: 중기재정전망 vs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명, 원, 억원)

	중기재정전망			예산안		
	수급자	평균급여액	급여액	수급자	평균급여액	급여액
노령연금	4,454,823	414,693	221,686	4,454,823	428,029	228,815
유족연금	848,842	247,170	25,177	848,842	247,170	25,177
장애연금	79,494	404,223	3,856	79,494	404,223	3,856
장애일시금	3,072	15,592,448	479	3,072	15,592,448	479
반환일시금	215,332	5,201,271	11,200	215,332	5,201,271	11,200
사망일시금	11,977	4,233,113	507	11,977	4,233,113	50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정부는 국민연금 연금급여 예산안을 중기재정전망보다 높게 산정한 이유를 बे 이비부며 세대 중 본격적으로 인구증가(약 7.2%)⁴⁾를 알린 1958년생이 2020년부터 신규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되고, 최근 노령연금 평균급여액⁵⁾ 증가율(3.9%)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4) (인구수, 2015년 기준) 700(55년생) → 682(56년생) → 721(57년생) → 773천명(58년생)

5) 노령연금 3개년 평균급여액('15년 2.9%, '16년 4.5%, '17년 4.4%) 증가율(3.9%)을 반영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기재정전망 시 2016년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령연금 신규수급자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실제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추이를 보면, 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4.4%였으나, 2020년 예산안에 따른 월평균급여 증가율은 2019년 실적치 대비 8.4%로 2015~2019년 연평균 증가율과 상당한 차이(4.0%p)를 보이고 있다.

[노령연금 월평균급여액 추이]

(단위: 원, %)

구분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안)	증가율	
							2015~ 2019	2020
월평균 급여액	328,340	343,067	358,189	383,365	394,932	428,029	4.4	8.4

주: 2019년은 6월 기준 월평균급여액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액 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은 2020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 182조원의 14.8%를 차지하여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 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의 수급연령 도래가 확대됨에 따라 급여지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정부안 보다 감액되었으며, 2017년 정부안 19조 9,034억원 중 국회에서의 감액은 4,046억원 규모이며, 2019년 정부안 23조 2,893억원 중 국회 감액 규모는 2,700억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기재정전망, 집행추이, 월평균급여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저축계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가입 배제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¹⁾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I·II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0억 100만원(37.1%)이 증액된 1,07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2,877	78,090	78,090	107,091	29,001	37.1
청년저축계좌	0	0	0	11,713	11,713	순증
청년희망키움통장	11,039	19,034	19,034	22,574	3,540	18.6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첫째, 청년저축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예산안에 희망키움통장II의 확대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계층 청년 8,000명²⁾을 대상으로 매월 근로를 통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137-309

2) 8,000명은 일하는 주거, 교육 및 차상위청년(생계, 의료급여 수급청년 제외) 전체 대상자 (13.5만명 추정) 중 가입률 6%(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첫째 평균적인 가입률)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한 본인적립금 10만원에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하여 총 3년간 정부지원금 1,080만원(만기시 본인부담금 포함 1,440만원)을 지원하며, 2020년도에는 6개월분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로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 대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수급자를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에 대해 3년만기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차상위계층 청년이 가입가능하고,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은 가입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므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가입가능하여 동 사업과 대상인원의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 사업 현황]

통장명	가입대상자	주요내용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근로 중인 18~34세 - 본인 월소득 세전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수급자 제외)	10/15만원 적립, 3년만기 720만원/1,080만원 (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
전남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 근로 중인 만 18~39세 - 본인근로소득 월평균 2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매월 10만원 적립, 3년만기 720만원 환급 (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
광주 청년비상금 통장	- 근로사업소득 61만원 이상 175만원 이하 (수급자 제외)	매월 10만원 적립 (저축액과 적립금 1:1 매칭)

주: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은 2019년 3,000명을 모집인원으로 함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령에 따른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제도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4월 30일 전에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저축계좌는 예산안 제출 후인 9월 30일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요청하여 예산안 제출 이후인 2019년 10월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³⁾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사유에 따라 4월말 이후에 제출 가능하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까지도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협의 결과를 참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저축계좌와 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차상위 이하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정 규모 여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저축계좌는 본인부담금(10만원)을 저축하면 본인부담금의 3배인 30만원(정부적립금)을 본인부담금에 매칭하는 방식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칭비율을 높게 설정한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청년저축계좌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자산형성사업은 청년 본인저축액과 정부 적립금을 1:1로 매칭하고 있는 점, 기존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가 가입하는 희망키움통장Ⅱ 대비 정부 지원금 3배 수준의 청년저축계좌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장(근로소득장려금)별 특징]

구분	희망키움 통장 I	희망키움 통장 II	청년 저축계좌 (20년 신설)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 키움통장 (19년 신설)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가구		자활근로 참여자	일하는생계급여 수급청년 (15~39세)
지원연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청년 (만 15~39세)	제한 없음	청년 (만 15세~39세)
본인저축	월 5 또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5 또는 10만원	본인저축없음 (근로소득공제 금 10만원)
정부적립금	가구소득에 비례 (평균 33.4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 (평균 30만원)
3년 적립액	1,562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1,512만원 + 이자	1,440만원 + 이자
지원요건	3년 이내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교육 이수 및 자격증 취득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와 자치단체 자산형성 계좌 간 중복가입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년저축계좌 관련 고시 제정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⁵⁾

둘째,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인원이 목표 대비 저조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가입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15~39세)에 대해 3년 후 탈수급을 전제로 ① 생계급여 사업 예산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금 10만원을 해당 청년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해 주고, ② 동 사업(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산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예산안은 신규 지원인원 5,000명 및 2019년까지 가입자 중 통장유지 인원 5,209명에 대하여 월 30만원씩 12개월(신규 인력은 6개월) 지급에 225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통장 누적가입자는 2018년 12월 3,616명에서 2019년 8월말 4,275명으로 8개월간 659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18.12~’19.8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실적]

(단위: 명)

구분	’18.12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신규가입자	351	-	48	72	157	118	96	96	72
누적가입자	3,616	3,616	3,664	3,736	3,893	4,011	4,107	4,203	4,275
해지자 ¹⁾	17	24	22	37	50	46	30	33	23

주. 1) 해지자는 탈수급이 되었을 때 본인이 희망하여 해지하거나(청년희망키움통장을 보유한지 3년이 되기 전에 탈수급이 되더라도 3년 동안은 계속 통장을 유지할 수 있음), 6개월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미적립하여 환수해지된 경우임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국회 제출 후인 2019년 9월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가입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상에서 일하는 2020년 수급청년 전체로 확대하고, 2019년 청년 총 소득에서 1인가구 기준 중

4) 보건복지부는 자산형성 사업 관련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고시(행정규칙)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추진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희망키움통장 I·II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고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5) 보건복지부는 정보화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중복 가입 차단이 가능하며, 유사사업 간 정보공유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소득의 20% 금액을 공제한 후 63%를 곱하여 정부 적립금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2020년 청년 총 소득에 45%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020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개선안]

구분	현행(2019년도)	개선안(2020년도 적용)
대상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341,402원) 이상	일하는 수급청년 모두 가입 가능 다만, 월별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미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정부적립금) 산출방식	[청년 총 소득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2019년 341,402원)] × 63%	청년 총 소득 × 45%

자료: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정부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산출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일부만 발생하더라도 통장 가입이 가능하고, 모든 대상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적립금)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근로소득 40만원에 대해 3.7만원의 정부적립금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었으나, 2020년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18만원으로 2019년 대비 4.9배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정부적립금)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근로소득금액(예시)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근로 소득 장려금	개편전 (‘19년) (A)	-	-	-	37	100	163	226	289	352	415
	개편후 (‘20년) (B)	45	90	135	180	225	270	315	360	405	450
제도변경에 따른 증가액 (B-A)		45	90	135	143	125	107	89	71	53	35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률 제고를 위해 가입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¹⁾은 6개 노인돌봄사업(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을 통합 제공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69억 9,500만원(51.7%) 증액된 3,727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다.

[2020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8,852	245,802	245,802	372,797	126,995	51.7

주: 기존 6개 사업의 예산액 합계를 2019년 예산액으로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사업은 현행 6개 사업, 3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을 통합하여 전년 대비 10만명 증가한 45만명에 대해 대상자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134-30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전후 비교]

(단위: 명, 백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201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020년 예산안)		
구분	대상인원	제공인력	예산	대상인원	제공인력	예산
돌봄기본서비스	295,000	11,800	132,610	450,000	29,891	372,797
돌봄종합서비스	47,686	26,664	105,591			
단기가사서비스	1,347	1,212	491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6,900	115	3,853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600	10	335			
지역사회자원연계	7,186	44	796			
합 계	358,719	39,845	243,676			

주: 1.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1,955백만원)과 노인돌봄서비스운영(171백만원)을 포함 시 예산은 245,802백만원이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2019년 기준)은 서비스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만 서술하였음

2. 2019년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중복수행인력이 있어 총 인원은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700개의 권역별 제공기관의 기획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서비스 관리자(1,766명)에 대해 월 261만원(일 8시간 근무), 생활관리사(28,125명)에 대해 월 133만원(일 5시간 근무) 등 인건비 3,42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행기관 초기 직무교육을 위해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에 대한 초기 직무교육비 2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편성 세부내역]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368,218백만원
- 수행인력 인건비 : 342,844백만원
· 서비스관리자 : 1,766명×2,610천원×12개월×68%=37,615백만원
· 생활관리사 : 28,125명×1,330천원×12개월×68%=305,229백만원
- 수행기관 사업비 : 700개소×4,079천원×12개월×68%=23,302백만원
- 수행인력 초기 직무교육 : 2,072백만원
②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 2,900백만원
- (인건비) 1,309백만원, (사업비) 1,252백만원, (운영비) 339백만원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리 : 1,679백만원
- (일반수용비) 450백만원, (관리용역비) 995백만원, (포상금) 150백만원 등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첫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에서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이 대폭 변경되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 도입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작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²⁾

바우처 사업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통한 공급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가 필수적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낮은 바우처 이용단가로 인해 다수기관이 경쟁하는 시장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병행하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장기요양사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로 보전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장기요양으로 연계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요양 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³⁾

이에 따라 기존 민간에 맡겨진 서비스전달의 공적 개입·책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 12년만에 바우처사업에서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복지관, 사회서비스원 등으로 제공기관이 변경되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였다. 이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를 장기요양 대상으로 연계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관련 사업 경험이 적은 신규 제공기관이 추진함에 따라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아이돌봄지원

3) 2018년말 기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2,129개로, 이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이 64.4%인 1,372개소로 나타났다.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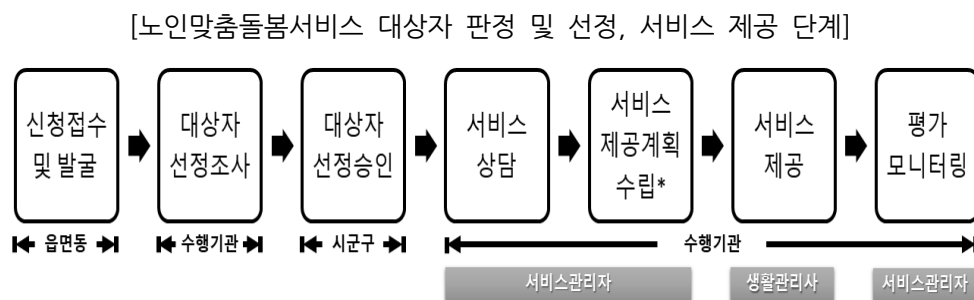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업 대상자가 2019년 장기요양 등급 외 A, B자(14.7만명) 중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4.8만명)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상자선정도구에 따라 중점돌봄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대폭 확대되었다. 즉,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전(前) 단계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 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상자선정도구를 통해 판별된 중점돌봄군 7만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대상자 소득·재산기준이 대폭 완화(노인의 70% 해당) 되는 등 신청자가 전년 대비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자 중 중점돌봄군을 적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대상자선정도구를 개발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전후 사업 비교]

구 분	기존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편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 중점돌봄군)
주요내용	청소, 가사 도움	안전지원·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지원 및 서비스 연계 등 예방적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기업 등 시설,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직영 (재가장기요양기관 참여 불가)
제공인력 자격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자격요건 없음)
제공인력자격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없음
서비스관리자	없음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사례관리 등 수행
수급인원 자격	장기요양 등급 외 A,B자(14.7만명) 중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상자선정도구에 따라 중점돌봄군 선정
수급인원	4.8만명	7만명
1인당 평균 급여량	19.1시간	20시간
제공인력 인건비	바우처 단가의 75%인 9,720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지급방식	서비스제공시간당 9,720원 지급	정액으로 월급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우처 사업은 적정 서비스 공급에 대한 집행관리가 필수적이거나, 종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20년 개편된 사업에서는 서비스관리자가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대상자 사례관리 및 생활관리사 관리·지원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마지막으로, 종전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반면, 2020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자격요건 없이 채용되는 생활관리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는 가사 지원 및 청소 등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에게 대한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수행해 온 것과 비교해볼 때, 생활관리사는 숙련도가 낮아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 및 생활관리사 중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를 종합돌봄 업무에 우선배치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⁴⁾

4)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의 경우 자격요건 없이 채용되지만 이 중 일부 인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사업 개편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시스템 개편,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신규 채용 및 교육 등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각 시군구를 3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약 700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과 단절 없이 20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별 사회복지사(서비스관리자) 2~3명씩 총 1,766명과 수행기관별 생활관리사 약 40명씩 총 28,125명을 1월 이전에 채용해야 하므로 공고 및 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력 채용 후에는 채용인원에 대해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은 초기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나 채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서비스 제공 전 직무교육 이수 기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1월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동 사업이 사업운영체계 변경, 6개 사업 통합 운영 등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사업성격에 변화가 큰 사업임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인력 채용 및 교육 등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며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재가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억 8,500만원(102.0%)이 증액된 120억 5,300만원이다.

[2020년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0	5,968	5,968	12,053	6,085	102.0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논의는 정부의 2017년 7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기본방향」부터 본격화되었다. 민간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 공단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2018년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이용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019년도 예산안 반영 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을 다시 변경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제정안²⁾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639-307

2) 2018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사회서비스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이 발의(「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464호)」,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984호)」)되었다.

중인 상태이므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타당성 검증 및 운영모델 발굴 후 2022년까지 지방사회서비스원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논의 연혁]

2017년		2018년		2019년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 전국 17개 시도별 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및 요양시설을 공단에서 직영 운영	⇒	-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등 이용 수요 많은 시설부터 직영 - 진흥원 1곳당 예상 직영시설 200개, 소속직원 3~5천명	⇒	-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운영 -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 민간제공기관 운영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정하여 사회서비스원 직원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 4개소 및 2020년 신규 설치 7개소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총 11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등 10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안 편성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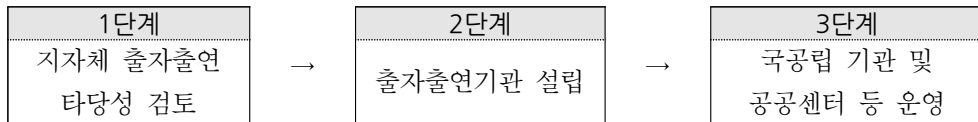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0,634백만원
- 시설비: 500백만원×7개소×100% = 2,000백만원
- 인건비: 3,084백만원
· (‘19년 설치) 41.12백만원×20명×4개소×50%=1,645백만원
· (‘20년 설치) 41.12백만원×20명×7개소×50%×6/12개월=1,439백만원
- 사업·운영비: 4,050백만원
· (‘19년 설치) 1,080백만원×4개소×50%=2,160백만원
· (‘20년 설치) 1,080백만원×7개소×50%×6/12개월=1,890백만원

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예산 989백만원은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만 표시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각 시도별로 출자·출연기관(사회서비스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 각 시도별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바우처사업³⁾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종합재가센터)을 설치한 후 종합재가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바우처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수입으로 운영한다.⁴⁾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사업 추진 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첫째,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분담비율 명확화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⁵⁾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19.8.21.) 결과, ① 사업 추진시 직영시설 평가지표 구체화, ②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분담비율 명확화, ③ 종사자 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등 보완을 통한 조건부 추진⁶⁾으로 결정되었다.

3) 주로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유사사업을 하나의 센터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한다. 2019년 10월 10일 현재 6개소 설치·운영 중이고, 2019년 8개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지정 요청한다.

5) 2019년 정부안은 6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심사과정에서 8억원이 감액되었다.

6)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 추진과 관련하여 조건부 추진의 정확한 개념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건부 추진은 복지·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방식이 2019년부터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분과위원이 평가항목별(3개 영역: 거시분석사업설계의 적정성·비용효과성)로 ‘적정·보통·미흡’ 등급 결정 후 등급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에 따라 적정(85점 이상), 조건부 승인(84~70점), 부적정(70점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①·③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12)」 결과를 반영하여 직영시설 평가지표 구체화, 종사자 책임성 강화장치 마련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②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인건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더라도 예산서 상 금액을 정액지원하고 정액지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는 인력 확대,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재원을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직영시설 평가지표 구체화, 종사자 책임성 강화장치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중기재정계획 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종료 이후 국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22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도 계속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 상 사회서비스원 설치비는 설치년도 1회 지원(국비 100%), 인건비·운영비는 설치연도 포함 3년간 국비 50%, 3년 이후부터는 30% 지원(매년 3% 인상)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3년 157억원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중기재정계획(2019~2023)]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5,968	10,746	14,996	19,379	15,695	66,784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동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국비 보조의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성격의 사업기간 동안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인 사

회서비스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거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2023년 이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9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곳이 1개소,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센터 등을 공모절차 없이 직접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 사업 추진으로 인해 시설 위탁이 계획대비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 그러나 2020년에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2022년이 되면 17개소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근거법률 제정과 무관하게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모두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2019년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전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9년 추진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기존의 경기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초 경기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복지재단은 연구기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하기에 이질적이므로 경기복지재단 일부를 분할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 별도 설립 전까지 경기복지재단 내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더라도 사업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9년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시설 운영계획 41개소 대비 실적은 21개소로 51.2%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계획 대비 운영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원 시설 운영현황]

(단위: 개)

구분			계	서울	대구	경기	경남
합계(A+B)		계획	41	9	11	12	9
		현황	21	4	8	7	2
국·공립 시설 등 (A)	어린이집	계획	14	5	2	2	5
		현황	3	1	1	0	1
	노인요양시설	계획	2	-	-	1	1
		현황	1	-	-	-	1
	기타 시설 (장애인시설 등)	계획	6	-	4	2	
		현황	3	-	3	-	-
	공공센터 ¹⁾	계획	9	-	3	5	1
		현황	8	-	3	5	-
종합재가센터(B)		계획	10	4	2	2	2
		현황	6	3	1	2	-

주: 1)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원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1. 2019년 10월 10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어린이집 공모에 2번 탈락하였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은 경남 김해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그치고 있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대체인력지원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센터는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지정 또는 협약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탁할 수 있어 계획 9개소 대비 8개소 수탁으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 즉,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사회서비스원이 공모 절차 없이 서비스제공권을 위탁받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큰 보육 및 요양시설 보다 상대적으로 위탁이 용이한 공공센터 위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이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 사업의 당초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적 근거 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다함께 돌봄 사업¹⁾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2억 1,000만원(218.2%)이 증가한 338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다함께 돌봄	925	10,635	10,635	33,845	23,210	218.2

자료: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²⁾에 따른 마을돌봄의 한 유형이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 사업 등 마을돌봄을 2018년 9만명에서 2022년 19만명으로 10만명³⁾ 늘리는 등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합하여 53만명에 대해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 1) 코드: 일반회계 2537-314
- 2) 영유아 대비 초등학생 지원 부족으로 “초등돌봄 절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년)에 “지역 내 돌봄여건 확충 추진” 과제를 반영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17년~)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포함하였다. 2017년 8월부터 맞벌이가정 자녀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18년 4월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 3) 다함께돌봄 9만명 증가, 지역아동센터 등 1만명 증가를 통해 마을돌봄 10만명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2018년		확 대		2022년
학교돌봄	24만명	+	7만명 (초등돌봄교실) 3만명 (교실활용)	⇒	34만명
마을돌봄	9만명	+	10만명	⇒	19만명
합 계	33만명		20만명		53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다함께 돌봄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실시 근거가 신설(2019.1.15. 개정, 2019.4.16. 시행)⁴⁾되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 197개소 설치완료를 예상하여 12개월분 인건비(센터장 및 돌봄선생님 2명)를 편성하였고, 2020년 신규 설치되는 550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2019년까지 운영비는 미지원되었으나 2020년도에는 개소당 월 30만원씩 반영하였다.

[2020년도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8,438백만원
- 센터장 4,238백만원
· (기존) 197개소 × 1명 × 2,200천원 × 12개월 × 48% = 2,496백만원
· (신규) 550개소 × 1명 × 2,200천원 × 3개월 × 48% = 1,742백만원
- 돌봄선생님 : 1,725 → 4,200백만원
· (기존) 197개소 × 2명 × 1,090천원 × 12개월 × 48% = 2,474백만원
· (신규) 550개소 × 2명 × 1,090천원 × 3개월 × 48% = 1,726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 0 → 578백만원
- (기존) 197개소 × 300천원 × 12개월 × 48% = 340백만원
- (신규) 550개소 × 300천원 × 3개월 × 48% = 238백만원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 6,510 → 24,22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4)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자치단체 수요가 예산안 편성 개소수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예산안에 따른 개소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2019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의 내용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등과 중복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 개소 수가 200개소에서 150개소로 조정되었다.⁵⁾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당초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⁶⁾상 2020년 신규설치 예정(400개소)대비 150개소 증가한 550개소 신규설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목표 대비 50% 수준인 280개소가 제출되었다.⁷⁾

[2020년도 다함께 돌봄 센터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82	26	1	3	7	7	7	5	60
(29.3)	(9.3)	(0.4)	(1.1)	(2.5)	(2.5)	(2.5)	(1.8)	(21.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1	7	19	9	1	21	13	1	280
(3.9)	(2.5)	(6.8)	(3.2)	(0.4)	(7.5)	(4.6)	(0.4)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5) '19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시, 동 사업의 내용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등과 중복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 센터 신규 설치 개소 수를 200개소에서 150개소로 조정하였다 (2019년 정부안 138억원→ 2019년 확정예산 106억원).

6)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

2018	2019	2020	2021	2022
17	200	400	400	800

자료: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계획

- 7) 정부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조사한 다함께돌봄 4개년 계획에 따르면 '20년 지자체 수요는 450개소이므로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지자체 평가지표가 550개소를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수요 이상의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특별교부세 등에 반영되는 평가와 연계 시 자치단체 수요가 정확히 고려되지 않고 예산이 배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 목표치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추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수요를 확인할 경우 예산안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다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 2018년 및 2019년 실적행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므로, 예산안 편성 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함께 돌봄 사업은 자치단체의 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표는 개소수 증가가 아니라 적절한 마을돌봄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용인원이 개소당 17명으로 계획(50명) 대비 저조하게 나타나므로 **이용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에서 지자체, 교육청, 지역 돌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아동돌봄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19년 10월 기준으로 지역별 아동돌봄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역별 총괄적인 아동돌봄계획을 위해 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마을돌봄 및 학교돌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점검절차가 없는 실정이다.⁸⁾

특히 다함께 돌봄 사업의 목표는 개소 수 증가가 아니라 적절한 마을돌봄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을돌봄 확대계획에 따르면, 다함께 돌봄 센터 2022년까지 1,817개소에 9만명의 추가 돌봄인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1개소당 돌봄대상인원을 평균 50명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다함께 돌봄 센터 이용인원을 보면, 1개소당 돌봄인원이 17명으로 나타났고, 현재 이용인원을 전제로 1,817개소 확충 시 이용인원을 예상해보면 약 3만명으로 당초 계획의 1/3 수준이다.

8)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온종일돌봄현장지원단(교육부 소관)에서 온종일돌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수급 파악 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점검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함께 돌봄 센터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수(A)	25	7	1	2	2	0	6	3	13
이용자수(B)	412	93	9	37	20	0	74	53	222
개소당 이용자수(B/A)	16	13	9	19	10	0	12	18	17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개소수(A)	7	4	4	6	4	4	7	0	95
이용자수(B)	188	57	188	51	92	75	83	0	1,654
개소당 이용자수(B/A)	27	14	47	9	23	19	12	0	17

주: 2019.9.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정부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이용인원 확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교육청, 지역돌봄기관 및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사업¹⁾은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례관리사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44억 1,400만원(50.0%) 감액된 1,346억 5,200만원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주된 감소요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1,326억원)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이다.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7조²⁾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상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6억 8,500만원 감액(12.8%)된 58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34,685	269,066	269,066	134,652	△134,414	△50.0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66,853	67,680	67,680	58,995	△8,685	△12.8

자료: 보건복지부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639-306

2)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보건복지부는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에 국가와 지자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5.2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원 가정에서의 분리 예방·보호 결정·보호서비스·원 가정 복귀·자립지원 등 전 과정의 사례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총원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³⁾

2020년도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은 ①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이하 “드림스타트”)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하던 것을 서울 50%, 지방 80% 보조율로 변경하고, ②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사를 1,040명에서 925명으로 감축(△115명)하며, ③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신설하여 281명(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사 전환 115명, 신규채용 166명)을 배치하고 ④ 드림스타트 선도지역 지원 예산(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9년	2020년
국고보조율 조정	정액 (서울특별시는 그 외 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	서울: 50%, 지방: 80%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사 감소	1,040명 (서울 113명, 지방 927명)	925명(전년 대비 △115명) - 서울 100명, 지방 82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신설	-	281명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사 전환 115명 및 신규 166명(서울 18명, 지방 148명)]
드림스타트 선도지역 지원	-	20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첫째,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 일부인원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축소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 사업 시행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2020년

3) 2019년 기준으로 아동이 원 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 없이 최초 의뢰된 곳에 따라 임의로 결정된다. 2019년 4월 기준 시군구당 평균 요보호아동수는 19명이나 지자체 담당인력은 평균 1.2명 수준이다.

10월부터 지역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 115명을 보호아동전담요원으로 전환하고 166명을 신규 채용(3개월, 10~12월)하여 총 28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9년 및 2020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정 내역]

	2019년	2020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040명 (서울 113명, 지방 927명)	925명(전년대비 △115명, 서울 100명, 지방 825명)
아동보호전담요원	-	281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환 115명 및 신규채용 166명(서울 18명, 지방 148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구 아동담당부서에 배치되어 학대피해아동 이외 부모의 이혼·질병·사망, 유기 등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상담·가정조사, 가정과 분리여부 및 보호형태 결정,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축소(1,040명→925명, △115명)로 인해 사례관리 축소 등이 우려된다.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대상아동에 대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담당하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약 11% 감축 시 취약계층 대상아동에 대해 사례관리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⁴⁾

다음으로,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책임지고 직접 보호·결정하며,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 수요에 따라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281명)을 배치할 예정이므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취약계층 아동(0~12세) 및 가족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기초학습, 정서발달 교육), 치료가 중심인 반면, 전환되는 115명은 요보호

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취약계층 아동 약 70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가정, 방임가정 등)에 대한 조사, 개별 보호·관리계획 수립, 보호형태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원 및 사후관리 등 기존 수행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전환대상 인원 수요를 파악하고 사전교육 및 배치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축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지역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축소하면서 우수 드림스타트 지역에 한정된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도 예산안에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지역 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해당 예산은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지역에 대해 지원될 예정으로, 사실상 운영비 보조적인 성격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자치단체 보조율 조정으로 자치단체부담 증가 및 드림스타트 인력 축소(11.1%) 등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지역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므로, 인력을 축소하면서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지역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이 제도 운영상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수 드림스타트 선도지역 지원을 위해 편성된 20억원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의 국고보조율 조정 관련하여 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안이 제출되어 국고보조율 변경에 대해 관련 사업들을 비교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에 대해 현행 정책지원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50%,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9년 및 2020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역 비교]

	2019년	2020년(안)
인력	(서울) 113명 (지방) 927명	(서울) 100명 (지방) 825명
국비	인건비 30,431백만원 (서울) 113명×2,530천원×12개월×66.7% (지방) 927명×2,530천원×12개월×100%	인건비 22,161백만원 (서울) 100명×2,601천원×12개월×50% (지방) 825명×2,601천원×12개월×80%
	사업비 36,305백만원 (서울) 25개소×164.52백만원 × 66.7% (지방) 204개소×164.52백만원 × 100%	사업비 30,923백만원 (서울) 25개소×176백만원×50% (지방) 204개소×176백만원×80%
지방비	인건비 1,142백만원 (서울) 113명×2,530천원×12개월×33.3% (지방) 지방비 부담 없음	인건비 6,710백만원 (서울) 100명×2,601천원×12개월×50% (지방) 825명×2,601천원×12개월×20%
	사업비 1,370백만원 (서울) 25개소×164.52백만원×33.3% (지방) 지방비 부담 없음	사업비 9,381백만원 (서울) 25개소×176백만원×50% (지방) 204개소×176백만원×20%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국고보조율 조정 이유에 대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역할 강화를 위해 현행 정책보조로 지원 중인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정률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통합서비스 기준보조율]

	현행 정액	개정안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서울특별시는 그 외 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	서울: 50 지방: 80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국고보조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4월 30일까지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동 사업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제출되었다.⁵⁾

사전협의 제도를 거치지 않은 예산 사업의 경우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심사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국고보조율 조정은 향후 지방재정부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사전협의를 선행될 필요성이 더욱 큰 사례로 판단된다.

5) 예산안 제출 이후인 9월 24일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다.

가. 현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¹⁾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대비 2,763억원 증액된 1조 1,990억 6,400만원 편성되었다.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636,838	822,002	922,761	1,199,064	276,303	29.9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는 74만명(2019년 본예산 61만명 대비 13만명 증가)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반영하였다.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2019년 본예산 대비 10.2만개(441천명→543천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7만개(2만개→3.7만개), 민간분야 일자리가 2.8만개 증가한다.

[2019년 및 2020년 일자리 편성 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9		2020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공익활동형	441	471	543
사회서비스형	20	20	37
재능나눔활동	47	47	30
민간분야	102	102	130
합 계	610	640	740

주. 참여형 자원봉사의 경우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 “노인단체지원(2100-2133-301)”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이관되어 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2019년과 비교하는 자료이므로 위 자료에는 표기하지 않았음. 참여형 자원봉사를 포함하면 78만개 일자리임

자료: 보건복지부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139-302

나. 분석의견

첫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대상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0세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신중년(50~60대)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대상인원 및 사업내용이 중복되므로, 유사·중복 참여대상 인원 및 사업성격 조정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지역아동센터, 한부모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다함께 돌봄 시설 등 보육시설)를 신설하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60시간 근로에 대해 월 급여 59.4만원을 지급하고 10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참여자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을 2만명에서 3.7만명으로 확대하였다.

[2020년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세부내용]

참여대상	근로시간	근로기간	급여수준	대상인원	성격
만 60세 이상	60시간/월	10개월	594,000원/월	37,000명	근로자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목적 및 참여대상이 유사한 고용노동부 소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1336-301)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간 중복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비영리기관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아동 학습지도, 독거노인 치매 예방,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 2020년도 예산은 5,000명에 대해 월 100시간, 10개월 근로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되며, 국고보조율은 약 50%이다. 동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고용노동부에 사업 신청 후 예산이 배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 수행기관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친다. 이후 사업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은퇴세대 또는 노년층의 경력 및 자격증 등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사업 모두 재정지원 일자리에 속하고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²⁾ 또한, 2019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은 신중년(50~60대)을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배치 시설(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 및 대상자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당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대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과 이들의 시장형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등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와 차별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집행 현황을 보면 일부 인원이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연령도 60대 이상이 44.8%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와 대상자 및 근무유형(시설)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소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60세 이상 (19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신중년(50~60대)
근무 성격	근로	좌동
근무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	좌동
근무 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다함께돌봄시설, 어린이집 등	관내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시설(농촌기술센터 등), 취약계층 가구,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대상 인원	'19년 20,000명, '20년 37,000명	'19년 2,500명, '20년 5,000명
근무 기간	월 60시간, 10개월	월 100시간, 10개월('19년 월 60시간)
시간당 단가	9,000원	10,699원('19년 10,400원)
월 급여	59.4만원	94.5만원

주: 2020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2019년과 2020년이 달라진 부분은 괄호 안에 2019년 내용을 작성)
자료: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2)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자리는 대부분 소득보조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일자리 등)이지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근로자로 사업을 설계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0년도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60세 이상인 자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범위가 더욱 유사해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50~54세가 29.3%, 55~59세가 25.9%, 60~64세가 30.7%, 65~69세가 9.8%, 70세 이상이 4.3%로, 60세 이상이 44.8%로 나타났으므로,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두 사업 간 유사중복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참여자	1,849	541	479	566	183	81
(비율)	(100.0)	(29.3)	(25.9)	(30.7)	(9.8)	(4.3)

주: 2019년 8월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은퇴하는 60대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사회 서비스 영역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60~64세에 대한 소득지원 공백을 축소하기 위해 연령을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령 확대로 인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와 유사·중복 사업 추진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2019년 9월 자치단체 수요조사³⁾ 결과 24,176명으로 2020년도 편성인원인 37,000명의 65.3% 수준에 그쳤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경우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⁴⁾ 이에 따라 2019년 두 사업의 일자리가 총 22,500개(20,000+2,500)에서 2020년 42,000개(37,000+5,000)로 약 2배 증가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한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2019년 9월 자치단체 수요조사³⁾ 결과 24,176명으로 2020년도 편성인원인 37,000명의 65.3% 수준에 그쳤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경우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⁴⁾ 이에 따라 2019년 두 사업의 일자리가 총 22,500개(20,000+2,500)에서 2020년 42,000개(37,000+5,000)로 약 2배 증가 시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

3) 수요조사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의 수요가 아니라 시도별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제공할 사회복지시설의 수요를 조사한 것이다.

4)

를 요청하도록 하고 사전협의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10월 15일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⁶⁾

이에 더하여 2019년 집행과정에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자의 기존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매칭함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서 특수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기존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매칭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간 중복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차별화 및 대상인원 조정 등을 통해 사업

[2020년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도별 수요조사 결과]

(단위: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010	1,943	1,259	1,900	688	607	381	123	3,806
(12.5)	(8.0)	(5.2)	(7.9)	(2.8)	(2.5)	(1.6)	(0.5)	(15.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12	882	1,556	1,934	1,649	1,555	1,511	360	24,176
(4.2)	(3.6)	(6.4)	(8.0)	(6.8)	(6.4)	(6.3)	(1.5)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5)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2019년 집행실적을 보면, 2월 13,962명, 3월 17,745명 등으로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6월부터 목표인원(2만명)이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사업 대상인원을 확대 편성(3.7만명)하였다.

[2019년 월별 배치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0	13,962	17,745	18,985	19,505	20,149	20,707

자료: 보건복지부

- 6)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의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7) 2019년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배점항목을 보면, 소득인정액 35%, 노인일자리 중도포기 경험 10%, 세대구성 15%, 활동역량(보행능력, 의사소통관련능력) 30%, 수행기관의 적합성판단 10%로, 경력 및 자격증 등이 고려되는 배점항목이 없다.

[2019년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표 배점항목]

(단위: %)

합계	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중도포기 경험	세대구성	활동역량 (보행능력, 의사소통관련능력)	수행기관의 적합성판단
100	35	10	15	30	10

자료: 보건복지부

을 추진하도록 하고 참여자의 기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매칭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도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2015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19년 추경예산부터 9개월에서 11개월로 일자리기간이 연장되어 연중 상시 일자리로 운영됨에 따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는 2015년 26.2만개에서 2020년 예산안에 54.3만개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28.1만개)하였다.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는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월 20만원이 유지되다가 2017년도 본예산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되고, 2017년도 추경예산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다.⁸⁾

또한, 2019년도 추경예산부터 공익활동형 일자리 기간(9개월)을 2~3개월 연장하여 연중 상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2020년도 예산안에도 연중 11개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자리 규모 및 단가, 참여기간의 확대 등에 따라 노인일자리 예산 전체 규모는 2015년 본예산 3,442억원 대비 2020년 예산안 1조 1,991억원으로 3.4배 증가하였다.

[2015~2020(안)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개,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	2019		2020 예산안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	262	292	298	330	294	324	355	441	471	543
월 단가	20만원				22만원	27만원	27만원	27만원	27만원	27만원
연간 참여기간 ¹⁾	9개월							11개월	11개월	
공익활동형 예산총액	2,494	2,613	2,836	2,964	3,071	3,633	4,684	5,517	6,428	8,180
노인일자리 예산총액 ²⁾	3,442	3,581	3,907	4,035	4,664	5,232	6,349	8,220	9,228	11,991

주. 1)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있으며, 노노케어는 12개월 일자리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11개월분씩 편성됨

2) 노인일자리 예산총액은 공익활동형,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전체유형을 포함한 세부사업 예산

자료: 보건복지부

8) '17년 예결위 예산심사시 “정부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월수당을 2017년에는 2만원, 2018년에는 3만원 증액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되었다.

연중 11개월 일자리 운영 시 겨울철 안전 관리 및 건강 문제 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면밀히 수립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⁹⁾

9) 특히, 2016년 추경예산, 2017년 추경예산 및 2019년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계획인원 대비 저조한 집행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시도별 수요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일자리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익활동형 일자리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일자리		실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계획	집행	예산	일자리
2016년 추경	합 계	12,739	9,171	32,000	23,227	72.0	72.6
	서 울	1,220	193	4,800	1,059	15.8	22.1
	지 방	11,520	8,978	27,200	22,168	77.9	81.5
2017년 추경	구 분	추경		일자리		실집행률	
		교부액	집행액	계획	집행	예산	일자리
	합 계	56,833	52,994	29,620	28,644	93.2	96.7
	서 울	5,025	2,712	3,550	1,712	54.0	48.2
	지 방	51,808	50,282	26,070	26,932	97.1	103.3
2019년 추경 (19.9)	구 분	추경 교부액		일자리		일자리 실집행률	
				계획	집행		
	합 계	71,049		30,000	26,811	89.4	
	서 울	6,025		2,000	339	17.0	
	지 방	65,024		28,000	26,472	94.5	

자료: 보건복지부

가. 현 황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¹⁾은 시설·병원이 아닌 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돌봄), 보건의료, 주거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82억 2,200만원(86.2%) 증액된 177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고보조율은 50%이다.

[2020년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0	6,393	9,542	17,764	8,222	86.2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선도사업 추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2019년 본예산으로 노인 5개소, 장애인 2개소, 정신질환자 1개소 등 8개소를 지정하였고, 2019년 추경예산 증액분²⁾으로 노인 8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2년간 총 16개소가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추진현황]

		1차 선도사업 ('19 본예산)	2차 선도사업 ('19 추경예산)
사업기간		2019.6~2021.5	2019.9~2021.8
선정개소수		8개소	8개소
유형별 선정 개소 (16)	노인(13)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장애인(2)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1)	경기 화성시	-

자료: 보건복지부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631-330

2)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32억원이 국회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었다.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선도사업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집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운영’, ‘시군구 지역케어회의 운영’ 등 통합 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인력 확충 및 운영비 등에 집행되며 16개 시군구에 52억원(1개소당 3.5억원, 지방비 포함 7억원)이 편성되었다.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16개 시군구에 115억원이 편성되었고, 구체적으로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노인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52억원과 재가서비스 연계 44억원이고, 장애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탈시설 체험주택지원 2억원, 재가서비스연계 7억원 등이다.

[2020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운영 : 52억원
-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 추진 : 115억원(16개 시군구)
 - 노인 커뮤니티케어(13개 시군구) : 96억원
 - * 주거환경 개선 52억원, 재가 서비스 연계 44억원
 - 장애인 커뮤니티케어(2개 시군구, 탈시설 지원) : 17억원
 - * 탈시설 체험주택 지원 2억, 주거환경 개선 8억, 재가 서비스 연계 7억
 -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1개 시군구, 중간집 운영) : 2억원
 - * 중간집 지원 및 재가 서비스 연계 2억
- 모니터링 및 평가 : 7억원, 선도사업 담당인력 교육비 : 4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예산 실행행률을 보면, 2019년 10월 기준으로 28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본예산 63억 9,300만원 대비 44.6%, 추경예산 95억 4,200만원의 29.9% 수준으로 나타났다.³⁾

3)

나. 분석의견

정부는 각 지자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노인 유형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퇴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은 16개 대상 시군구에 대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포괄보조금이란, 사업종류, 투입 재정규모 등을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 결정하고 소관 부처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집행 및 사후정산 과정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환류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노인 대상 통합 돌봄은 ①퇴원지원, ② 주거지원 ③ 재가서비스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퇴원지원 부분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퇴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인 대상 통합 돌봄 사업추진 세부계획]

퇴원 지원	주거 지원	재가서비스 지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주거 개보수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개인별 욕구에 적합한 케어서비스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 커뮤니티케어’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요양병원 퇴원준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노인”, “재가돌거노인 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019년도 6월부터 시작된 사업의 실적을 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퇴원 지원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⁴⁾⁵⁾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요양병원

[2019년도 예산 실행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6,393	9,542	6,126	6,126	0	6,126	2,849	0	0	29.9

주: 1. 본예산의 8개 지자체는 6월부터 선도사업을 시작하였고,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된 8개 지자체는 9월부터 사업 개시

2. 지방자치단체 집행액은 2019.10.4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지역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부분이 아직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집행 시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 등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퇴원 지원 시 건강보험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신설하여 2019년 11월 시행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실적에 대해서 이 사업의 경우 포괄보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집행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2019년도 노인대상 통합돌봄 지역 사업계획서]

지자체	사업모델1	사업모델2	사업모델3	사업모델4
부천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389명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80명	장기요양등급외 A 대상자 329명	66세 이상 노인 98,621명
전주시	요양(중합)병원 퇴원준비 노인돌봄 250명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 노인 돌봄 250명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돌봄 110명	-
김해시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 지역정착지원 돌봄 75명	퇴원하는 이행기 노인 회복 지원 300명	재가 돌봄 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70명	만성질환 노인 돌봄 70명
천안시	요양(중합)병원 퇴원 준비 노인 80명	장기요양등급외자(A, B) 판정노인 120명	사각지대 만성질환 노인 200명	-
광주 서구	만성질환 미관리군 노인 400명	병원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관리군 3,335명	-

주: 자치단체 사업계획서(2019년)

자료: 보건복지부

5)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예산 집행 과정 중에는 그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2019년 결산 과정에 파악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2019년 9월 현재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퇴원 실적은 많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2018.12.27.)

[요양병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수가 현황]

신설 항목	상대가치점수(점)	비고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관련 상담 활동 포함)	233.27 (17,470원)	환자지원 심층평가 실시한 경우 산정, 최대 2회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I	295.76 (22,150원)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하고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II	631.72 (47,320원)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하고 환자지원팀이 지역 행정기관 등을 환자(보호자)와 동행 방문하여 연계시 산정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의 경우 178억원의 지원금액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과정에서 사업 목표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퇴원 목표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자치단체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계획의 적정성 및 규모와 월별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실적 제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통해 기획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각 자치단체별,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편, 사업의 주된 목적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집행관리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¹⁾은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574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억 6,600만원 (196.5%) 증액되었다.

[2020년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0	0	19,375	57,441	38,066	196.5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시도별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평균 59일임을 고려하여 50매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총 24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이다.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639-308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명, 천원, 매, %)

지급대상	인원	단가	매수	보조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86,073	1	50	서울 30, 지방 50 (평균 46.7)
차상위계층 ¹⁾	545,604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²⁾	230,467			
합 계 ³⁾	2,460,000			

주: 1)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증명서 발급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거주자 대상

3) 합계는 동 사업 예산편성 상 기준인원이며, 만명 단위로 반올림하여 세부인원의 합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당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2019년 추경 당시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예산안에 동 사업을 574억 4,100만원 편성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타당성재조사 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해 재해예방, 안전 문제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재조사가 면제되었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미세먼지 마스크 수급률을 100%로 편성하였으므로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른 유사 복지사업의 신청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23만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장을 통해 대상자에게 마스크를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외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223만명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 대상자가 직접 방문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 한해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및 이·통장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률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는 복지담당공무원 및 이·통장이 마스크를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복지담당공무원

등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동불편 대상자에 한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의 인원은 다른 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46만명에 대해 수급률 100%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추경사업으로 편성·집행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미세면지 마스크 보급 사업’과 유사하게 개인에 대해서는 방문 수령, 시설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설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는데, 수급률이 저조하여 예산 실효행률이 60.5%로 나타났다.²⁾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유사 사업의 수급률 및 실효행률이 저조한 점을 참고하여, 집행단계에서 미세면지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거주자에 대해서는 9.2만 세트 중 6만 세트가 연내 집행되었으나 개인에 대해서는 19.8만 세트 중 9만 세트가 연내 집행되어 예산 실효행률은 60.5% 수준이다.

가. 현 황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¹⁾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욕구에 맞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7억 9,900만원(100.1%) 증액된 85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인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 사업²⁾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5억 6,900만원(148.2%) 증액된 712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발달장애인 지원	8,556	42,720	42,720	85,499	42,799	100.1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0	28,718	28,718	71,287	42,569	148.2
주간활동서비스지원	0	19,103	19,103	37,782	18,679	97.8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0	9,169	9,169	33,059	23,890	260.6

자료: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은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12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1535-309

2) 동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기본형(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및 확장형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가 각각 40시간, 72시간 차감된다. 반면,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월 44시간 1가지 유형으로 제공되며 활동지원급여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³⁾ 또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주간활동 조사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 격심의원위원회에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된다.⁴⁾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기초지자체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및 선정을 담당하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예약금 관리 및 바우처 비용의 지급 및 정산을 담당하게 된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중·고등학생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만12세 이상 18세 미만)
월 제공시간	기본형(88시간), 단축형(44시간), 확장형(120시간) 3가지 유형	44시간 (월~금: 16시~19시 최대 3시간, 토: 9시~18시 최대 4시간)
제공서비스	주간활동 제공기간에 등록, 소그룹을 구성하여 주간활동 이용. 제공기관 별 프로그램이 상이하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이 30%이상	직접제공형: 학생이 제공기관으로 이동하여 돌봄서비스 이용 학교연계형: 제공인력이 학교로 방문하여 방과후돌봄 제공
대상자 선정	수급자격심의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
제공인력 기준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관련 자격 보유자	좌동
서비스 단가	12,960원(2인그룹), 10,360원(3인그룹), 9,060원(4인그룹)	좌동
활동지원 급여 조정	기본형 이용시 활동지원급여 40시간 단축, 확장형 이용시 활동지원급여 72시간 단축	없음

주: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그룹형(2인, 3인, 4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됨
자료: 보건복지부

- 3)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모두 월 제공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 4)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며, 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수급자격심의원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비교적 엄격히 선발하는 측면이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지원제외 대상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방과후활동서비스의 경우에는 돌봄 취약가구, 일반 중·고등학생 재학생, 방과후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에 대해 우선선발 혜택을 제공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사업 대상자가 2020년에 모두 확대되므로, 철저한 사업 수행을 통해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2,500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88시간씩 제공되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는 4,000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44시간씩 제공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2020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되는데, 주간활동서비스는 4,000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는 7,000명으로 확대된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 및 서비스 제공시간 변화]

구분	2019년	2020년
주간활동서비스	2,500명 / 88시간	4,000명 / 88시간
방과후활동서비스	4,000명 / 44시간	7,000명 / 44시간

자료: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월별로 꾸준히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3월에는 619명이 신청하였으며, 9월말 기준으로 총 2,8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활동서비스 월별 사업추진 현황]

(단위: 명, 누적)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신청	619	1,401	1,913	2,300	2,503	2,727	2,835

자료: 보건복지부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2020년 예산안에는 2019년에 비해 1,500명(60%)증가한 4,000명에 대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2020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19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9월 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⁵⁾ 이에 따라 아직 사업

5)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하여 지자체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나

실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나⁶⁾, 2020년도 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라 대상자를 현재 4,000명에서 3,000명(75%) 증가시킨 7,000명에 대한 금액이 반영되어 있다.⁷⁾ 따라서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이 2019년 뿐 아니라 2020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주간활동서비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고자 2,727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2,342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으로 1,805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165명은 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 중 약 23%(537/2,342)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약 7%(165/2,342)는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⁸⁾

동 사업의 대상자가 학생임을 고려한다면 학교에서의 안내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7월, 8월이 방학기간이므로 학생들에게 동 사업에 대한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을 9월로 연기하여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각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6) 10월 9일 기준으로 100개 시군구에서 1,276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1,153명에 대하여 바우처가 생성되었다.
- 7) 사업대상자 확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2020년도 사업대상자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는 수행되지 않았다.
- 8)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시스템으로는 신청자 수, 대상자로 등록된 인원 수는 집계되지만 실제 이용자 수가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제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실제 이용자 수를 파악하고 있다. 두 데이터의 출처가 달라 집계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제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9월초 기준과 가장 근접한 2019년 8월말 시점의 바우처 시스템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주간활동서비스 실제 이용 현황(2019년 8월말, 9월초 기준)]

(단위: 명)

신청자	대상자 선정	이용인원	대기인원
2,727	2,342	1,805	165

주: 신청자 수와 대상자로 선정된 수는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시스템에서 추출하였으며, 실제 이용 인원과 대기인원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다른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 사업 추진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미 이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⁹⁾

9)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동시간대 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시간 조정, 취업 전환, 외부활동 적응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 이용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 현 황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사업¹⁾은 장애심사전문기관의 장애정도 판정,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8억 7,900만원(5.8%)이 감액된 30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 사유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역사업인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준비 사업 예산안의 전년대비 37억 6,200만원(89.3%) 감액 편성이다.

내역사업인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29,667	32,422	32,422	30,543	△1,879	△5.8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453	453	453	453	0	0

자료: 보건복지부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로 신규 신청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고, 검사비용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다. 진단서 발급비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기타 장애의 경우 1만 5천원이 지원되며 검사비는 진단서 발급비 포함 소요 비용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1531-302

[2019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준]

	진단서 발급비 지원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과 직권재판정은 제외)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가능)
지원액	1)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2) 기타 장애(신체적 장애) : 1만 5천원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 총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중복수급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0년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의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53.9%, 2016년 51.1%, 2017년 41.9%, 2018년 42.4%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은 8월말 기준으로 35.5%이다.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2015	503	503	271	53.9
2016	503	503	257	51.1
2017	453	453	190	41.9
2018	453	453	192	42.4
2019.8	453	453	161	35.5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최근 집행 부진은 장애등급 재판정 제외 요건 완화에 기인한다. 2013년 11월 27일 이전에는 2~3년마다 재판정을 시행하고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

포함 연속 3회)에서 같은 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이후의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었으나, 요건이 완화되면서 1회의 재판정(최초 판정 포함 연속 2회)에서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후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집행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 발급비와 검사비 집행인원은 각각 18,495명, 2,905명이었으나 2018년 기준으로 11,477명, 2,820명으로 하락하여 추계인원(19,800명, 6,358명) 대비 비율은 57.9%, 4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명, %)

연도	발급비			검사비		
	추계인원(A)	집행인원(B)	비율(B/A)	추계인원(C)	집행인원(D)	비율(D/C)
2015	31,161	18,495	59.3	4,894	2,905	59.4
2016	37,345	15,663	41.9	5,760	3,391	58.9
2017	19,800	11,339	57.2	6,358	2,510	39.4
2018	19,800	11,477	57.9	6,358	2,820	44.3
2019.8	19,800	7,552	38.1	6,358	2,350	36.9
2020	19,800	-	-	6,358	-	-

자료: 보건복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동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2020년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인원을 최근 실제 집행 인원인 19,800명, 6,358명으로 추계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최근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2020년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³⁾

2) 발급비 집행인원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검사비 집행인원은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급비 지원 대상이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검사비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자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부터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지원 신청시기 조정(현재는 장애심사결정 통지시점에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장애등록신청단계에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변경), 현행 담당공무원이 미신청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안내를 하고 있으나 서비스 신청 누락자를 전산상 체크하여 대상자를 확인하도록 시스템 개편·시행, 현행 의무재판정 생계/의료수급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중복신청이 금지되어 있으나,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 현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¹⁾은 동의·수집·보호·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자발적 참여자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1:1:1 매칭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 42억 6,7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2020년 3개 부처 총 128억원).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²⁾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편성되었다. 2020년 예산안은 22억 5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2020년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	0	0	0	4,267	4,267	순증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11,976	13,635	13,635	17,619	3,984	29.2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0	0	0	2,205	2,205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21)」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질병극복 연구에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861-317

2) 코드: 일반회계 4861-312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10년간 3단계(2+3+5년)로 단계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2020년 및 2021년)는 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 마련 시기로, 2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³⁾

1단계(2만명)는 신규 모집자(희귀·난치질환) 1만명과 기존 사업 참여자⁴⁾ 1만명을 연계하여 실시한 후, 2단계 실시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R&D)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3개 부처 ¹⁾ 128억원(복지부 42억 6,700만원)	22억 500만원
- (시료수집) 희귀질환자 시료수집 의료기관 지원비 2,500백만원(833백만원) - (센터 운영) 기획운영위원회 운영, 전산운영·사업기획 등 사업 총괄 운영 1,400백만원(467백만원) * 기획운영위원회, 2·3단계 기획 400백만원, KISTI 500백만원 KRIBB 500백만원	- 희귀질환자 시료수집 의료기관 지원비 (500백만원) - 보건의료 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 운영 (1,005백만원) - 임상·유전체 정밀분석보고서 생산체계 구축(700백만원)
- (유전체 서열분석) 유전체 해독·기본 변이 분석 및 데이터 관리 7,000백만원(2,333백만원)	
- (선도사업 연계) 기존 사업 데이터 확보 및 관리를 위해 700백만원(233백만원)	
- (활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활용 환경 개선 연구, 지식베이스 창출을 위한 정밀의료 기반 연구 위탁 등을 위해 1,150백만원(388백만원)	

주 1) 3개 부처에서 1/3씩 예산 편성
자료: 보건복지부

3)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은 국정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해당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9.1.)에서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사업 추진에 앞서 개인정보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음. 이후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계획」 제4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19.4.)에서 의결되었다.

4) KOGES(‘01~),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19~’21), 울산계룡(‘16~), 정밀의료기술개발(‘17~’21),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 개발사업(‘19~’24), 월드클래스300-유전체(‘18~’22) 등의 사업에서 동의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 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는 신규모집 5,000명 및 기존사업 참가자 2,500명 등 총 7,500명에 대해 유전체 해독을 실시할 계획이다.⁵⁾ ① 전국 15개 의료기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② 해당 의료기관이 대상인원의 유전체 정보, 임상정보, 생활습관, 환경정보, 생체 시료 등을 보건복지부로 보내면 ③ 보건복지부는 이를 다시 국내 유전체 분석 업체에 보내서 분석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체 분석 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총 10년간 사업 추진이 예정되었으나, 정부는 2020년 및 2021년은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150억원, 2021년 150억원 등 총 2년간 300억원의 시범사업이므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19.5.21)」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총 10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시범사업(2년간) 재정규모가 국비 300억원이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작하는 것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 실시 전에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0년도 예산안은 2년간 시범사업(1단계)을 추진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사업(2·3단계)을 실시하는 계획이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 2·3단계 기획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0~2021년을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설명하면서 2020년 1차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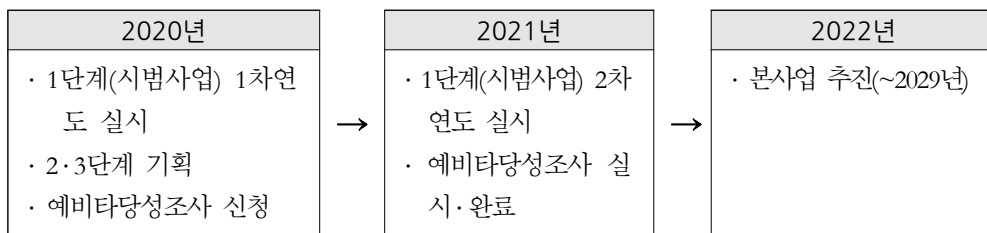
5) 보건복지부는 기존사업 참가자 중 2,500명에 대해서는 이미 유전자 해독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2020~2021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2022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실시 중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사실상 1차년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한 효과 분석이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2·3단계 기획에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3단계 기획은 첫 시범사업 연도에 기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시범사업 2년간의 결과를 토대로 2·3단계를 기획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관련 정부 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관련 계획을 시범사업(2020~2021년) 결과를 토대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¹⁾은 기피과목 전공의의 수련여건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적정 수급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억 2,300만원(17.3%)이 증액된 29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채용된 인력의 12개월치 인건비 반영을 위하여 전년대비 25억 3,400만원(33.1%) 증액된 10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140	24,937	24,937	29,260	4,323	17.3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0	7,660	7,660	10,194	2,534	33.1

자료: 보건복지부

신규간호사들이 병원에 취직하여 곧바로 환자들의 신체 및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게 되는 등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기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교육해주는 간호사(프리셉터)는 본인의 업무 외에도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신규간호사의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 프리셉터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자 2019년부터 실시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4331-300

지원 사업은 대한병원협회 위탁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율은 100%). 사업대상은 국공립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2019년 신규간호사 채용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관이다.²⁾ 교육전담간호사는 병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유형 1), 신규간호사 임상실무에 대한 교육 수행 및 평가를 담당하는 신규교육전담간호사(유형 2)로 구분된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기관별 규모에 따라 최대 5명 이내로 지원되는데, 300병상 이상의 경우 급성기병원은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단과병원(재활, 정신병원 등)은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신규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는 100병상(또는 병동)당 1명 지원된다.

2020년도에는 동 사업을 통해 국공립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1인당 인건비 328만원씩 총 259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교육전담간호사(유형 1)	신규교육전담간호사(유형 2)
역할	-병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 -신규교육전담간호사 조연 및 지도 -신규간호사 교육 총괄 및 관리	-신규간호사 임상실무에 대한 교육 수행 및 평가 -신규간호사 현장 지도 및 적응 지원
자격기준	임상경력 최소 3년 이상 및 교육전담간호사 필수교육 이수자	신규간호사와 1대1 매칭이 되어 임상, 현장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할 수 있는 2~3년차 경력간호사
인건비 지원	300병상 미만: 1명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2명 500병상 이상 700병상 미만: 3명 700병상 이상 900병상 미만: 4명 900병상 이상: 5명	100병상(또는 병동)당 1명
2020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교육전담간호사 259명 × 12개월 × 328만원 = 10,194백만원 (국공립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 중 급성기병원 109개소 대상)	

주: 1. 본 표의 교육전담간호사(유형1) 인건비 지원 내역은 급성기병원 기준이며, 단과 병원의 경우 300병상 미만 1명, 300병상 이상은 2명의 인건비가 지원됨

2. 급성기병원이란 급성 질환,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입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 국공립 병원 중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군병원, 치료감호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분석의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의 2019년 집행 현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신규 내역사업인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총 109개 중 신청한 61개 국공립병원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2019년 5월 선정 완료), 259명의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9개월분이 2019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집행 실적이 부진한 양상을 보인다.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예산현액 76억 6,000만원 중 34억 3,500만원이 집행, 11억 8,600만원이 실집행되어 집행률과 실집행률은 각각 44.8%, 15.5%로 나타났다.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집행 현황(9월 25일 기준)]

(단위: 백만원, %)

예산현액(A)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7,660	3,435	1,186	44.8	15.5

자료: 보건복지부

집행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당초 4월부터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위탁기관 선정이 3월에 완료되어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었으며, 동 사업의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근본적 원인은 동 사업이 2019년~2020년 2년간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³⁾ 정원 및 직제 운용이 경직적인 국공립 의료기관이 2년간의 한시적 사업 참여를 위해 정원 확대를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61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33개소에서만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하였으며, 당초 채용 목표 인원 259명 중 161명이 채용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3) 동 사업은 2019년 신규로 편성 시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이후 사업의 지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이외에 지역별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 병원 11개소 중 4개소에서만 교육전담간호사를 19명 채용하고 있으며, 부산에는 3개소 중 2개소에서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하였으나 3명 채용에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현황 (2019년 9월 10일 기준)]

(단위: 개소, 명)

사업 대상 의료기관		채용 인원	
당초계획	실적	당초계획	실적
61	33	259	161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는 2019년보다 2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4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⁵⁾ 그러나 2019년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현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추가적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101억 9,400만원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공립병원을 지속적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신규 인력 채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경북은 각각 2개소, 1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교육전담간호사 채용 실적이 전무하다.

5) 이는 사업 대상 확대에 의한 것은 아니며, 기존 2019년 9개월치 인건비 반영분이 2020년에는 12개월치 인건비가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가. 현 황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¹⁾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구축·운영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5,500만원(120.0%)이 증액된 1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0	546	546	1,201	655	120.0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0	300	300	955	655	218.3

자료: 보건복지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운영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5,500만원(218.3%) 증액된 9억 5,500만원이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 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2750-30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

구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원)
학생정원	2023년 49명 선발 ¹⁾ , 2026년 총 정원 200명으로 운영
교원	미정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교직원 수, 교과과정 결정 예정)
교육기간	다른 의대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교지(校地)	전북 남원시에서 부지 마련 예정 (남원시 제공 학교부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에 무상양여 추진)
건축규모	학교 8,200㎡, 기숙사 3,900㎡
총사업비 (2020~2024)	47,029백만원 - 건축비(교사·기숙사) : 24,002백만원 - 설계비 : 1,185백만원 - 법인사무국 운영비(2020~2022) : 1,422백만원 - 복지부 설립추진단 ²⁾ 운영비(2020~2022) : 120백만원 - 연구비('21년, 공공의료 특화교육과정 설계) : 300백만원 - 학교운영비(2023~2024) ³⁾ : 20,000백만원

주: 1) 2023년 학생정원 49명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반영되었음

2) 복지부 설립추진단 :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1단 3팀, 20명 규모)

3) 학교운영비(2023~2024) : 교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학비 지원금 등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2020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동 법률안은 국가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법률안명 (의안번호)	제안 일자	주요내용
국립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015720호)	2018. 9. 21.	- (설립형태)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 (학생선발) 의료공공성 구현에 적합한 인재 선발 - (학비지원)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가 부담 - (교육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병원으로 함 - (의무복무)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군복무기간(3년) 및 전공의 수련기간(4~5년)은 제외함 - (재산 및 회계)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허용 - (재정지원) 학교운영비, 학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동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크게 3가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역량으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교육병원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의대를 활용하여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복무 10년 및 불이행시 면허취소는 과도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다.²⁾

또한, 동 사업은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안 대비 설계비가 2억 4,400만원 삭감되어 최종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당 예산은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

2) 이외에 2018년 제 364회 국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학으로 하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식으로 적절한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실습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학 설립 예정지 간의 거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으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법률 제정 관련 진척된 사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대비 6억 5,500만원 증액된 9억 5,500만원이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¹⁾은 전공의들에게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의 수료 후 의사과학자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의에 대해서는 기초의과학 및 융합과학 분야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등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37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3,900만원(282.0%)이 증액되었다.

[2020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0	971	971	3,710	2,739	282.0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위원회 운영	0	750	750	1,200	450	60.0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0	200	200	2,483	2,283	1,141.5
사업운영비	0	21	21	27	6	28.6

자료: 보건복지부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중인 전공의(2~4년차) 중 기관 당 매년 10명을 선정, 임상 수련과 병행하는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2년 이내로 지원하여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는 사업이다. 전공의에 대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소별로 2억원씩 지원되며, 기관별로 선발된 전공의 10명에 대하여 1인당 연구비 및 장학금으로 국비 2천만원이 지원된다.²⁾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가 대학원에서 기초의학 및 기초과학을 전공해야 한다.³⁾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3033-349

2) 전공의 1인당 총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국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며 나머지 1천만원은 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국비 지원금은 연구비이며, 기관 매칭금은 장학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20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전공의 연구지원사업(교육인프라 구축)
: (계속) 3개소 × 2억원 = 6억원 (신규) 2개소 × 2억원 = 4억원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
: 운영위원회 구축 및 운영 2억원
○ 의사과학자 연구비 및 장학금지원
-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계속) 10명 × 3개소 × 2,000만원 × 12/12개월 = 6억원
(신규) 10명 × 3개소 × 2,000만원 × 10/12개월 = 5억원
(신규) 10명 × 2개소 × 2,000만원 × 4/12개월 = 1.33억원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사업
(신규) 30명 × 5,000만원 × 10/12개월 = 1,250백만원
○ 사업운영비 : 2,100만원(수용비 등)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당초 목표로 했던 임상, 기초과학 융합형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의 체계적 수행이 필요하다.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3개 의과대학에서 전공의 10명씩 선발되어 있으며 2020년에는 신규 5개소에서 총 50명(봄학기 신규 30명, 가을학기 신규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선정 현황]

	고려대 컨소시엄	서울대 컨소시엄	연세대 컨소시엄
학교(인원)	고려대(3)+경희대(2)+경희대(2) +부산대(2)+전북대(1)	서울대(10)	연세대(5)+아주대(4)+ 가톨릭대(2)

주: 연세대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교 소속 전문의가 총 4명 있으나, 이 중 1명의 전문의에 대한 지원은 아주대학교 자부담이며 국비 지원은 각 컨소시엄 10명, 총 30명에 대해 이루어짐

자료: 보건복지부

3) 2019년 선발된 전공의들의 대학원 전공을 살펴보면, 생화학, 약리학, 해부학, 미생물학, 분자의학, 중개의학 등의 기초 학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대학(컨소시엄)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의과학자를 양성할 예정이다. 각 대학별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3개의 대학 모두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 교육인프라 구축 계획]

학교	계획내용
고려대 컨소시엄	4차 산업형 융합 교과과정 개발, 융합 연구 체험실 구축, 융합연구 현장 기업체 방문 등
서울대 컨소시엄	융합 교과과정 온라인 콘텐츠 구축, 교육관련시설개선 및 활용, 전공의, 선배 의과학자 간 멘토링 활성화 등
연세대 컨소시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바이오 기업과의 연계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개발, 제약산업학 협동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동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 시 기존 개설된 학과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골자로 설계되었다고는 하나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개발 예정인 심화 프로그램이 9월까지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⁴⁾의 학교 선정을 위한 공고가 5월 1달간 실시되었으며 6월 말 선정됨에 따라 각 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준비기간이 부족하여 학생 선발 이후에도 심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전공의 31명 모두 2019년 가을학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으나, 임상과 기초과학의 융합형 커리큘럼이 아닌 기존 개설되던 기초과학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 예정인 심화 교육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선정된 학교의 연차별 목표를 살펴보면, 1차년도 원격 교육 가능한 동영상 시스템 개발, 2차년도 융합연구를 위한 필수공통 커리큘럼 개발, 3차년도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운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현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 사업에서 개발하는 심화 교육프로그램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전공의 연구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평가, 운영기관 제재,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대상자 선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2020년 봄학기부터 30명, 가을학기부터 20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의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지연된다면 기존 선정되어 있는 30명뿐 아니라 2020년 새로 선정될 50명의 전공의들 또한 동 사업에서 개발 예정인 융합형 심화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당초 목표로 했던 융합형 교육이 시기별로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⁵⁾

5) 2019년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에 6억원, 운영협의체 구축 및 운영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양 사업의 예산은 각각 3억 6,000만원, 1,700만원 집행행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현 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⁶⁾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재활·상담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4,000만원이 증액(13.6%)된 32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6,108	276,828	276,828	311,535	34,707	12.5
가사·간병 방문지원	25,525	28,985	28,985	32,925	3,940	13.6

자료: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만 65세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 가사·간병 서비스⁷⁾를 제공하는 사업이다.⁸⁾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사회적임원자의 퇴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임원자에 대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사회적임원자’는 만 65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장기입원

김려진 예산분석관(wls423@assembly.go.kr, 788-4638)

6)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35-305

7) 신체수발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간병지원(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가사지원(청소, 식사 준비, 양육보조),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등을 실시한다.

8)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24시간(336,000원) 또는 월 27시간(378,000원)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당 14,000원이다.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원되고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있다.

사례관리를 받은 사람 중에 퇴원자를 의미한다. 2019년 사회적입원자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예산은 월 55.5만원⁹⁾을 기준으로 1,750명에 대해 3개월간 70%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되었고, 2020년도 예산안은 인원, 단가를 동일하게 편성하고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였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2019	2020(안)
·(기존대상자) 333천원(정부지원금)×9,633명 ×12개월(지원기간)×70%(평균보조율) = 26,945백만원	·(기존대상자) 342천원(정부지원금)×10,000 명×12개월(지원기간)×70%(평균보조율) = 28,728백만원
·(사회적입원자) 555천원(정부지원금)×1,750명 ×3개월(지원기간)×70%(평균보조율) = 2,040백만원	·(사회적입원자) 571천원(정부지원금)×1,750명× 6개월(지원기간)×70%(평균보조율) =4,197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사회적입원자 퇴원 인원 대비 2019년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집행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므로, 집행을 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조정 및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사회적입원자에 대한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7월부터 시작하였고, 8월까지 2개월간 바우처 신청인원이 49명으로 예산편성인원 1,750명의 2.8% 수준으로 나타났다. 9월말 기준으로는 누적인원 95명(5.4%), 10월 4일 기준 110명(6.3%)으로 점차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9)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대해 월 40시간에 대해 월 555,000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2019년도 사회적임원자에 대한 가사간병방문지원 실적]

구분	바우처 신청	바우처 생성
7월~8월말	49명	34명
7월~9월말	95명	69명
7월~10월초	110명	109명

주: 10월초는 10월 4일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임원자에 대한 가사간병방문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신청인원 저조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인 사회적임원자 중 퇴원인원이 최근 3년간('16~'18년) 연평균 2,237명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인원(1,750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19년은 사업 시행 초기 홍보 부족 및 짧은 서비스 지원기간 등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및 홍보 부족 등을 고려하더라도 예산편성 인원 대비 이용인원이 6.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므로, 보다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도 사업 신청 저조원인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대상 인원을 산출하는 등 적정 수준의 예산 조정 및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¹⁾은 현재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3,500만원(9.6%)이 감액된 399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28,949	44,156	44,156	39,921	△4,235	△9.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28,809	37,509	37,509	9,965	△27,544	△73.4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140	6,647	6,647	29,500	22,853	343.8
을지로부지 감정평가비	0	0	0	456	456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내역사업인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총사업비 4,415억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이 2019년 대부분 완료될 예정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설계비는 전년대비 29억 6,100만원 증액된 94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다.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총사업비 1,294억원)은 2020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전년대비 226억 1,000만원 증액된 274억 5,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설계비는 전년대비 1억 9,300만원 증액된 19억 9,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2701-301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2019예산(A)	2020예산안(B)	증감(B-A)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부지매입비	30,821	356	△30,465
	설계비	6,533	9,494	2,961
	시설부대비	155	115	△40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부지매입비	4,845	27,455	22,610
	설계비	1,802	1,995	193
	시설부대비	0	50	50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음 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과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각각 2014~2018년에서 2014~2022년으로, 2017~2020년에서 2017~2023년으로 연장되는 등 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은 2014년 예산이 반영된 이후 문화재 발굴조사, 추가부지 및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17년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2018년 5월 완료),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2017년 예산이 반영된 이후 지역 주민의 감염병전문 병원 설립 반대 민원, KDI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간 연장(2018년 7월 완료)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는 4,415억원으로 확정(2018년 9월)되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의 총사업비는 1,294억원으로 확정(2018년 12월)되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모두 설계 착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설계비로 반영된 65억 3,300만원 중 65억 1,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의 설계비로 반영된 18억 200만원 중 17억 9,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주요 추진경과]

일 자	내 용
2001 ~ 2003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확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방안 제시
2010. 2.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서울시와 MOU 체결
2013.6. ~ 2014.2.	국립중앙의료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
2015.4. ~ 12.	문화재 발굴조사(2015.10~12. 시굴조사완료, 공사가능)
2015.12. ~ 2016.8.	추가부지(중앙감염병병원) 및 진입로 확보 등 쟁점사항 실무협의
2016.8. ~ 2018.7.	중앙감염병병원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
2017.5. ~ 2018.5.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2017.12. ~ 현재 (중단)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수행 중
2018.6. ~ 9.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
2018.6. ~ 현재 (진행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행 중
2018.8. ~ 12.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구축사업 총사업비 조정

자료: 보건복지부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소음기준 미충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또 다시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 확장(판교-양재 구간, 기존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으로 소음환경기준에 변경요인이 생긴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한 의무사항이다. 환경기준 부합성에 관한 평가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위하여 소음 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이며,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18년 11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간이 변경되어 2019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당초 보건복지부는 경부고속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부지 마련 등을 고려하였으나, 추가부지 마련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현재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다.²⁾

이 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용도 지역), 묘지공원(도시계

2)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비용은 최대 2,000억원(방음터널 설치 길이 최대 약 1km)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획시설)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변경해야 하는 등 부지 용도 변경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완료되어야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전제로 진행되어야함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결정은 현재 일시중지 상태이다.³⁾

더욱이 동 사업의 추진이 10년 이상 담보상태에 머무름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측에서 원지동 이전 중단을 선언하는 등 동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소음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⁴⁾

3)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소음 문제 해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4) 동 사업 외에 중앙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5,700만원이 중증외상 전문체계 구축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 중앙외상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될 예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뿐 아니라, 중앙외상센터 설치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가. 현 황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한 자살, 정신질환, 중독 예방,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범정부적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0년 예산안은 974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45억 3,600만원(33.7%) 증액되었다.

[2020년도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61,072	72,900	72,900	97,436	24,536	33.7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8,500	13,825	13,825	19,287	5,462	39.5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	0	0	0	2,005	2,005	순증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0	0	0	1,811	1,811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내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790명에서 580명 증원된 1,370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4억 6,200만원(39.5%) 증액된 192억 8,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신규 내역사업인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 사업은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경찰로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경찰 단독으로 피신고자의 정신과적 질환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대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3346-301

빈번해 해당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응급개입팀은 각 팀당 6명, 총 34개팀 20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해당 인력 채용과 차량 운영 지원을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또다른 신규 내역사업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인건비 추가 및 별도 편성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사업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총 207개소에 평균 1명씩 증원할 계획이다. 동 내역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18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내 인력확충 관련 내역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내역사업명	산출근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계속)790명×35.98백만원×50% + (신규)580명×35백만원×6/12개월×50% = 19,827백만원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	34개팀×210백만원(6명×35백만원)×6/12개월×50% + 차량 운영 지원 440백만원×50% = 2,005백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207개소×1인×35백만원×6/12개월×50% = 1,811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을 통해 인력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내역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을 통해 매년 신규 인력을 확충해오고 있다. 그러나 매년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사업 집행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에는 목표 채용인원 370명에 50명 미달하는 320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2018년에는 목표 채용인원에 비해 15명 미달하였다. 이는 지자체별로 연중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는 지원 인력이 충분치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²⁾

2) 보건복지부는 신규 채용의 어려움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대면상담, 정신과적 응급상황 현장개입 등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을 통한 신규 인력 채용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신규 채용 인원		예산	
	목표	실제 (미채용)	교부액	실집행액
2017	370	320 (50)	2,076	1,575
2018	130	165 (15)	8,500	7,988
2019.6	290	252 (38)	9,177	6,449

- 주: 1. 예산은 기존 인원과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구분되지 않아, 기존 인원과 신규 채용 인원을 모두 포함하는 집행내역을 기입하였음
 2. 2019년 실집행 내역은 현 채용인원 (252명)이 계속 근무한다고 가정한 수치임
 3. 2018년, 2019년에 전년도 미채용 인원 50명, 15명을 각각 우선 채용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을 통해 580명,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204명,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사업을 통해 207명, 총 991명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해당 인원은 사례관리 전문인력으로써, 「정신보건법」 제7조³⁾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및 비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신규 인력 채용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및 목표 대비 채용 미달성 인원 현황을 고려하면 2020년 연내에 991명의 인원을 전원 추가로 채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동 사업의 업무 특성상 채용 이후에도 이직이 빈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신규인력 채용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정신보건법」

제7조(정신보건전문요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한다.

가. 현 황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¹⁾은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억 1,500만원(4.8%) 감액된 61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의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6,500만원(6.5%) 감액된 58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52,065	64,578	64,578	61,463	△3,115	△4.8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45,851	62,154	62,154	58,089	△4,065	△6.5

자료: 보건복지부

나. 분석의견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고 전담전문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근무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담전문의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몇 년간 실집행률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6년 74.0%, 2017년 71.0%, 2018년 60.9%, 2019년은 6월말 기준으로 28.1%로 나타났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응급의료기금 2833-317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집행액(B)	실집행액(C)	집행률(B/A)	실집행률(C/A)
	당초	수정(A)				
2016	33,420	33,420	27,751	24,722	83.0	74.0
2017	33,864	33,864	30,937	24,057	91.4	71.0
2018	53,165	53,165	45,851	32,359	86.2	60.9
2019.6	62,154	62,154	36,522	17,464	58.8	28.1

자료: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7개소 총 175명이 채용되어 있었다. 총 17개소 중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은 인원 변화가 없었으며, 가천대길병원 3명 감소, 원주기독병원 2명 증가, 원광대병원 5명 증가 등 총 11명이 증가하여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총 186명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로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²⁾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채용 현황]

(단위: 명)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		
	201812	20199	변화		201812	20199	변화
가천대길병원	18	15	△3	충북대병원	12	11	△1
단국대병원	8	10	2	의정부성모병원	9	9	0
원주기독병원	12	14	2	안동병원	9	9	0
목포한국병원	12	11	△1	경북대병원	10	12	2
울산대병원	14	13	△1	국립중앙의료원(미개소)	1	3	2
부산대병원	19	19	0	원광대병원(미개소)	9	14	5
을지대병원	7	6	△1	제주한라병원(미개소)	6	9	3
전남대병원	9	10	1	경상대병원(미개소)		1	1
아주대병원	20	20	0	계	175	186	11

주: 변화는 2019년 9월, 2018년 12월 기준 각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수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 2018년 12월, 2019년 8월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담전문의는 145명, 2018년 12월 이후 신규 채용된 전담전문의는 38명, 2018년 12월 근무하였으나 2019년 8월 근무하지 않는 전담전문의는 30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2019년 8월 두 시점 간 전담전문의가 17.1%(30/145) 이탈한 것인데,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신규 채용의 어려움 뿐 아니라 고강도 업무로 인해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탈한 30명 중 10명은 전담전문의에서 지원전문의로 원내이동하였으며, 1명은 군인신분으로 복귀하였다).

2020년 전담전문의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비하여 채용계획 인원을 감축하여 234.5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전문의 인건비 지원액도 2019년 389억 6,600만원에서 51억 9,800만원 감액된 33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년대비 51억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긴 하였으나 2018년, 2019년 평균 채용 인원보다 여전히 많은 수를 채용할 계획으로, 인원 채용 기준³⁾, 1인당 인건비 지원액 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2020년에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2019년 전문의 평균 채용 인원과 2020년 전문의 채용계획 간 인원 차이를 살펴보면 가천대길병원 3.3명, 원주기독병원 5명 등 2018년, 2019년 전문의 평균 채용 인원보다 총 54명 많은 인원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이 1억 4,400만원이므로 2018년, 2019년에 비해 채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가정⁴⁾하면 약 77억 7,600만원(1억 4,400만원×54명)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
- 3)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신규채용 기준은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상 외상팀에 포함되는 전문과목(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자, 해당과목 전문의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이다.
 - 4) 실제로 2018년 12월, 2019년 9월 기준 전담전문의 인력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채용 인원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동 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 사항도 없으므로 인력 채용에 큰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5)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2월과 2019년 9월 평균 인원이 아닌 2019년 9월 인원만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48.5명(234.5-186)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또한, 2018년 12월, 2019년 9월 간 전담전문의 증가율(6.3%)을 고려하더라도 2020년 말 전담전문의 수는 200명 미만일 것으로 예측된다.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2020년 채용계획]

(단위: 명)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		
	2020 (A)	2018, 2019 평균(B)	차이 (A-B)		2020 (A)	2018, 2019 평균(B)	차이 (A-B)
가천대길병원	19.8	16.5	3.3	충북대병원	12	11.5	0.5
단국대병원	8.8	9	△0.2	의정부성모병원	13	9	4
원주기독병원	18	13	5	안동병원	11.5	9	2.5
목포한국병원	15	11.5	3.5	경북대병원	15	11	4
울산대병원	13.5	13.5	0	국립중앙의료원(미개소)	5	2	3
부산대병원	19.8	19	0.8	원광대병원(미개소)	18.7	11.5	7.2
을지대병원	7.8	6.5	1.3	제주한라병원(미개소)	14.4	7.5	6.9
전남대병원	11.5	9.5	2	경상대병원(미개소)	8	0.5	7.5
아주대병원	22.7	20	2.7	계	234.5	180.5	54

주: 본 표의 각 개소별 2020년 채용계획 인원은 각 개소별 월별 채용인원을 활용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으로, 각 개소별 연 평균 채용계획 인원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문의 채용 기준, 인건비 지원액 등 제도적 변경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채용실적을 고려해보았을 때, 2020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감액되긴 하였으나 2020년에도 계획인원을 채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는 2016~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전담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3차례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0억 6,500만원 (6.5%) 감액 편성하였다.⁶⁾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추가적 채용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6)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통해 전담전문의 인건비 인상, 중환자실 간호사 인건비 신규지원, 권역외상센터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가. 현 황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¹⁾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및 활동센서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4억 8,000만원(49.8%) 증액된 16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10,212	10,995	10,995	16,475	5,480	49.8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가 이상신호 감지 시 또는 대상자가 위급상황으로 119버튼, 응급호출기를 누를 경우 게이트웨이로 정보가 전송되고 곧바로 119 시도 소방본부와 중앙시스템으로 응급상황 데이터가 전송된다. 응급정보를 받은 119 시도 소방본부는 관할 소방서로 지령을 내려 서비스 이용가구에 응급출동 및 구호활동을 하게 되며, 중앙시스템은 해당 대상자의 응급관리요원에게 응급상황알림 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은 중앙시스템을 통해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상자와 119에 응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 사업은 기존 2G, 3G 통신기술 기반 장비의 노후화,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4G 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2020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총 10만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중 5만대는 기존 가구의 2G, 3G 장비를 교체, 5만대는 신규 가구를 선정하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응급의료기금 2831-314

여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장비 10만대 도입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54억 8,000만원(49.8%) 증액되었다.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의 신규 장비 도입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규장비가 지연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²⁾에 따라 200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2013년 시작) 가정에 센서 및 응급 호출기를 매년 설치해왔는데,³⁾ 기존 2G, 3G 장비들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응급관리요원이 장비를 사후관리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20년 도입 예정인 4G 통신기술 기반 장비는 구매 방식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통신 장비에 대한 통신료, 사후관리비 등이 장비 1대당 평균적으로 월 1만원씩 12개월치가 반영되어 있다.⁴⁾ 이는 조달청을 통한 구매 방식이 아닌 통신사로부터의 임대 형식이므로 장비 구입에 시일이 소요되지 않아 신규 장비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치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매년 대상 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장비를 설치해오고 있으나, 기존 노후화된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2016년부터는 신규 장비 설치 건수를 대폭 줄이고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교체를 주로 진행하였다.

4)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장비를 직접 사후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장비는 임대 형식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통신사 측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근거]

○인건비: 7,557백만원(전년대비 309백만원, 4.3% 증)
○운영비: 7,771백만원(전년대비 5,505백만원, 242.9% 증)
-택내장비 운영비: 7,350백만원
-기존장비 50,000대×4,500원×12개월×50% = 1,350백만원
-신규장비 100,000대×10,000원×12개월×50% = 6,000백만원
-지역센터 운영비: 399백만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비: 22백만원
○구축비: 90백만원(전년대비 △326백만원, 78.3% 감)

자료: 보건복지부

신규장비 도입 및 실제 설치를 각 가구에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신규장비 운영비 12개월분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동 예산이 2020년 연내에 전액 집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규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규격 및 사양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통신사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⁵⁾ 또한, 2020년 신규 장비 도입 관련 수요조사 결과 기존장비의 신규장비 교체에 대한 요구 물량 39,029대, 신규장비 도입에 대한 요구 물량은 21,808대로 나타나 예산안에 편성된 각 50,000대에 비하여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2020년 도입 장비 1차 수요조사 현황(2019년 9월 24일 기준)]

(단위: 대)

구분	기존장비 교체 (기설치 가구)	신규장비 도입 (신규 발굴 가구)
예산안 편성	50,000	50,000
요구물량	39,029	21,808
차이 (수요 부족분)	10,971	28,192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규장비 규격, 사업자 선정 등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164억 7,500만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신규 장비의 세부사양 확정을 10월 중으로 완료하여, 11월과 12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통신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6)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신규 도입 장비 규격, 사업자(통신사) 미확정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수요를 표출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추후 수요조사를 재 실시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의 확대 개편을 위해 실시한 BPR/ISP 결과 동 사업의 2020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독거노인 중 우울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로, 약 70만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58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발생 출연금 이자수입을 사업비 출연금 편성 시 반영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64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타 부처기관의 의료기기 분야 동일한 해외전시회 참여 지양 필요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II」 pp.270



식품의약품안전처

1

현황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7억원(31.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9년 247억원에서 2020년 324억원으로 31.4% 증가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019년 6백만원에서 2020년 7백만원으로 14.3% 증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4,827	24,692	24,692	32,437	7,745	3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	6	6	7	1	14.3
합 계	24,836	24,698	24,698	32,444	7,746	31.4

주: 총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5,5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억원(7.7%)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9년 5,054억원에서 2020년 5,454억원으로 7.9% 증가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24억원에서 23억원으로 2.0% 감소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45억원에서 43억원으로 5.0% 감소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54,626	504,133	505,541	545,428	39,887	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61	2,414	2,414	2,365	△49	△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716	4,480	4,480	4,256	△224	△5.0
합 계	461,803	511,027	512,435	552,049	39,614	8.0

주: 총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기금 및 내부거래가 없어 총계와 총지출이 동일하며, 두 기준 모두 세입 324억원, 세출 5,520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3개 회계로 구성되며, 각 회계 간 전·출입은 없다.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총계(세입 324, 세출 5,520)

일 반 회 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324	5,454	0.07	24	0	43

주: 총계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수입식품 방사능 강화 및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업체 지원 확대 등 먹을거리 안전 확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혁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와 기술지원 등 의료제품 안전제도 구축 예산이 증액되었고,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 신규 도입되는 방사능 검사장비 11대의 각 지방청 별 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으로,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본사업 추진 이전에 법안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컨설팅을 받았으나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2020년도 사업 수행 시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의 위생등급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10억 1,7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의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출현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 지원 연구사업은 식·의약 안전기술의 민간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수요 중심 안전기술 개발, 실용화 지원 및 역량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2020 예산안
일반회계(2개)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817
	민간 식의약 안전기술 촉진 지원 연구(R&D)	200
합 계		1,01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①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②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③ 농축수산물 안전관리(R&D)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국내 유통·수입식품 등 검사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방사능 분석 장비 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첨단재생 바이오법」 제정(19.8.)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검증을 강화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농축수산물 안전관리(R&D) 사업은 기후 및 수입다변화로 해양생물독소의 확산 및 신규 출현에 따라 독소 오염 수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 확보 연구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2020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 회계 (13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503	1,503	5,874	4,371	290.3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운영	315	315	415	100	31.7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225	225	370	145	64.4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988	988	2,373	1,385	140.2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	5,003	5,003	6,551	1,548	30.9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1,663	1,663	2,827	1,164	70.0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607	607	1,615	1,008	166.1
	희소·간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공급	200	200	700	500	250.0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연구(R&D)	13,582	13,582	18,280	4,698	34.6
	농축수산 안전관리(R&D)	6,237	6,237	9,113	2,876	46.1
	안전평가원 관리운영	9,410	9,410	15,635	6,225	66.2
	청사관리운영	432	432	1,587	1,155	267.4
	국제개발협력(ODA)	2,164	2,164	2,856	692	32.0
합 계		42,329	42,329	68,196	25,867	61.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II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본사업 추진 이전 법안 심사 경과 고려 필요

가. 현 황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¹⁾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500만원(64.4%) 증액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이다.

[2020년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0	225	225	370	145	64.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50인 미만) 공공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7월부터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노인 대상 급식센터 7개소 (급식소 수는 280개소)²⁾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구축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공급식소 지원체계를 현행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소 지원체계와 동일하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1232-311

2)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총 7개소를 시범운영중이다.

게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중 7개소에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중이며, 임상영양사, 노인전문영양사 등의 전문인력 14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공공급식소 현장방문,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예산안에는 12개월분 인건비 및 사업비가 반영되어 전년대비 1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센터 개소수는 2019년과 동일하게 7개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 7개소는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목표 채용 인원 14명이 채용되었으며, 현장 지원 사업비도 큰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인건비, 현장 지원 사업비의 실집행률은 8월말 기준으로 각각 27.8%, 27.5%로 나타났다.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및 현장 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019년 8월말 기준)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전문인력 인건비	99,000	99,000	27,478	27.8
현장 지원 사업비	66,000	66,000	18,150	27.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분석의견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사업 추진 이전 법안 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공공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9년 총 10개소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 당시 동 사업의 예산이 1억 5,000만원 삭감되어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³⁾

현재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3) 2020년에도 2019년과 동일한 센터(7개소) 규모를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제출된 중기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총 1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법률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주요내용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1114호)	2017.12.29	- 공공급식에 대한 정의 - 공공급식소의 신고 등 - 시설지원 및 공공급식 종사자 등 교육 - 시설표준모델 등의 개발·보급 및 공공급식소 평가 등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 공공급식관리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자료: 국회의안전보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노인의 식생활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현재 노인 대상 소규모 공공급식소가 안전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⁴⁾

그러나 동 사업이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사업수행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중복 문제, 동 사업과 유사한 센터 간 명칭의 혼란을 야기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중기 사업계획(2019년~2023년)]

(단위: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19	225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운영 등 : 60백만원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 165백만원(7개소)
2020	370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운영 등 : 40백만원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서울30%, 지방50%) : 330백만원(7개소)
2021	450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운영 등 : 40백만원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서울30%, 지방50%) : 410백만원(9개소)
2022	500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운영 등 : 40백만원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서울30%, 지방50%) : 460백만원(10개소)
2023	604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운영 등 : 44백만원 ○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서울30%, 지방50%) : 560백만원(12개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공공급식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위생 및 영양관리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수 있다는 점 등 사업체계정비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린이식생활법, 학교는 학교급식법,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급식시설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급식소’를 ‘사회복지급식소’ 등의 명칭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1년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사업의 본사업 추진 이전에 법안심사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¹⁾은 수입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 강화 등을 통하여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및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3억 7,100만원(290.3%) 증액된 58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 내역사업인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 검사체계 구축사업은 방사능 비상 사태, 방사능 검사 정책변화 등을 대비하여 자동시료 주입장치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해 24시간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4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987	1,503	1,503	5,874	4,371	290.3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 검사체계 구축	558	0	0	4,137	4,137	순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 등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통관·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하여 분석장비(방사능 검사장비 11대, 자동시료 주입장치 5대)를 확충하고자 2020년 예산안에 4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1032-302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 검사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장비 보강 3,800백만원
- 자동시료주입장치: 5대×100백만원 = 500백만원
- 1차(감마핵종) 분석장비 보강: 11대×300백만원 = 3,300백만원
○ 방사능 전용 실험실 구축 등(장비도입에 따른 시설보강) = 337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분석의견

신규 도입되는 방사능 검사장비 11대의 각 지방청별 배치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청 3대, 부산청 9대 등 방사능 분석장비를 총 23대 보유중이며, 자동시료 주입장치는 총 18대 보유중이다. 2020년 도입 예정인 자동시료 주입장치²⁾ 5대는 현재 미보유중인 지방청(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각 1대씩)에, 방사능 분석장비 11대는 서울청 1대, 부산청 4대, 경인청 6대씩 배치될 계획이다. 이 외에 기존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의 방사능 분석장비는 각 청별 1대씩 부산청과 경인청으로 총 3대를 이전할 계획이다.

[방사능 분석장비 및 자동시료 주입장치 보유 현황]

(단위: 대, 2019년 8월말 기준)

구분	방사능 분석장비			자동시료 주입장치	
	현 보유	증감	비고	현 보유	증감
서울청	3	1	신규 1	2	1
부산청	9	5	신규 4 이전 1	8	1
경인청	5	8	신규 6 이전 2	5	0
대구청	2	△1	이전 △1	1	1
광주청	2	△1	이전 △1	1	1
대전청	2	△1	이전 △1	1	1
계	23	11		18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방사능 분석장비에 1대씩 장착하여 검사시료를 자동시료 주입장치에 세팅하면 자동으로 분석장비에 시료를 주입하여 검사하는 장비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검사가 급증함에 따라 분석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물량 처리를 위하여 신속검사법³⁾이 도입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신속검사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속검사법의 한계점⁴⁾ 지적, 식품공전 시험법으로의 환원 요구로 인하여 2020년부터 다시 식품공전 시험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속검사법에서 식품공전 시험법으로의 환원에 따른 방사능 검사 능력을 살펴 보면, 검사장비 1대 당 1일 검사능력은 약 6건, 1대당 연간 검사능력은 1,500건이며 현재 보유 장비 23대를 고려하면 연간 34,500건의 방사능 검사가 가능하다. 2020년 검사물량은 약 56,000건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2016~2018년 수입검사 연평균 증가율 8.3%, 제조일자·로트별 검사⁵⁾ 추가 비율 15%, 유통수거 검사 4,500건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⁶⁾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량 차이 약 21,500건(56,000건 - 34,500건)에 대한 검사를 위해 장비 11대를 추가로 도입 예정이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의 방사능 검사법은 방사능 측정시간을 10,000초로 고시하고 있으나, 신속검사법은 1/6수준인 1,800초가 소요된다.

4) 신속검사법의 검출한계가 공전시험법 검출한계보다 높아 적은 양의 방사능 오염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5)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제조된 각기 다른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품이 포함되어 1건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분석은 각기 다른 제조번호, 제조일자 별로 실시하지만 통계는 신고건수인 1건으로 집계되어 제조일자·로트별 검사를 감안한 실검사수는 실제 수입건수보다 많다.

6) 2019년 수입검사 증가율은 고려되지 않았는데, 2019년 8월까지 총 25,883건의 수입검사가 이루어졌다. 연도별 1월~8월 수입검사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은 25,883건이 이루어져 2018년에 비해 8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8월 23일부터 최근 5년간 수입 식품 통관검사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이력이 있는 17개 품목에 대하여 수거량을 2배로 강화하여 시험검사를 1번에서 2번으로 강화 실시하고 있다. 2019년 1월~8월 검사건수만을 고려한다면 2020년 검사건수 추계시 연평균 증가율 8.3%를 활용하는 것은 과다추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8월 23일부터 실시된 강화조치를 감안한다면 2019년 9월부터 방사능 검사건수가 전년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검사건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8
통관단계(실검사)	39,391 (25,091)	44,338 (28,408)	47,549 (30,790)	29,675
수입건수	34,995 (22,210)	37,963 (24,347)	41,074 (26,687)	25,883
로트별 추가 건수	4,396 (2,881)	6,375 (4,061)	6,475 (4,103)	3,792
유통단계	4,549 (3,086)	4,555 (3,118)	4,600 (2,866)	3,134
합계	43,940 (28,177)	48,893 (31,526)	52,149 (33,656)	32,809

주: 2016, 2017, 2018년 각 셀의 괄호안은 1~8월 합산 수치를 의미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전시험법을 통한 연간 방사능 검사 능력]

- 1일 검사능력/대: 86,400초(24시간) × 70%(가동율)/10,000초 = 약 6건
- 연간 검사능력/대: 6건 × 250일 = 1,500건
- 연간 검사능력: 1,500건 × 23대 = 34,500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신규 도입되는 장비 11대를 서울청 1대, 부산청 4대, 경인청 6대씩 배치할 계획이나, 이는 지방청 검사물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지방청별 방사능 수입검사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 약 10%, 부산청 약 50%, 경인청 약 40% 등, 각 지방청별 수입검사 건수 및 비중은 연도별로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20년 신규 도입 장비의 지방청별 배치계획을 확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서울청과 부산청에는 분석실 각 2개, 3개씩⁷⁾ 있으나 각 분석실별 세부 배치 계획은 아직 잠정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각 지방청별 방사능 수입검사 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계	서울청	부산청	경인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2016	34,995	4,064 (11.6)	17,684 (50.5)	12,932 (37.0)	4	20	291
2017	37,963	4,236 (11.2)	19,247 (50.7)	14,149 (37.3)	5	18	308
2018	41,074	4,339 (10.6)	20,035 (48.8)	16,364 (39.8)	18	16	302
2019.8	25,883	2,355 (9.1)	12,157 (47.0)	11,154 (43.1)	1	12	20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 배치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 도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 서울청 분석실은 서울, 강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청 분석실은 부산, 감천, 통영에 위치하고 있다.

가. 현 황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¹⁾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출현 등에 따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개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8억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0년도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0	0	0	817	817	순증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 사업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제정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으로 개발·제품화를 지원하고 제도 선진화 도모 등을 위하여 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시행(2020년 5월 1일)에 따른 체계 구축, 제품화 지원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0년도 신규 사업이다. 혁신의료기기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BT,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 등 첨단 기술의 적용이나 사용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된 의료기기를 의미한다.²⁾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서 유래한 검체를 체외에서 검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3032-311

2) 혁신의료기기의 예로 하반신 마비 환자의 보행을 위한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혈당측정을 위한 스마트콘택트렌즈 등을 들 수 있다.

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 시약, 기구,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³⁾

동 사업은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체계 구축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역사업에는 3억 3,200만원, 4,500만원, 4억 2,100만원,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2020년 예산안 편성 근거]

○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332백만원(신규)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기술 지원: 300백만원
- 혁신의료기기 정책 개발을 위한 산학연 워크숍 개최: 13백만원
- 인증체계 민원설명회 및 교육 등: 19백만원
○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45백만원(신규)
-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역량 강화: 45백만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및 기술지원: 421백만원(신규)
- 임상적 성능시험 기준마련: 100백만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100백만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208백만원
-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개발을 위한 산학연 워크숍 개최: 13백만원
○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체계 구축: 19백만원(신규)
- 인증체계 민원설명회 및 교육 등: 19백만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분석의견

관련 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은 국내외 혁신의료기기 관리제도에 대한 조사 실시, 제품 개발 동향 조사,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의료기

3)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예로 임신진단테스트기, 혈액형 판독 시약 등을 들 수 있다.

기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동법 23조에 따라 시판 중인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 관찰 후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인력 및 기구를 갖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준마련 사업을 통해 임상적 성능시험 제도 및 성능시험 기관 지정제 도입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사업은 동법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 법령]

사업명(내역 및 내내역 포함)	관련 법령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기술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9조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3조
임상적 성능시험 기준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7조, 제8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2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상기 언급한 사업들 중 대부분은 연초에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위탁 수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2019년 4월 30일 제정,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해당 법률 시행 이전에 위탁기관 선정을 완료하여 법률에 명시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동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추진 체계]

사업명(내역 및 내내역 포함)	추진 체계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기술 지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공모, 위탁 수행
임상적 성능시험 기준 마련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공모, 위탁 수행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책 및 제도 조사·연구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공모, 위탁 수행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주: 「의료기기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의 정보 또는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시판 중인 혁신의료기기의 임상적 효과 관찰 후 이상반응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판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혁신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시판 후 조사에 관한 세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업계에 제공 및 활용 지원을 위한 것으로,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 현 황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¹⁾은 식중독 예방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안심 급식·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5,500만원(14.8%)이 감액된 60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인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은 소비자 만족도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0년도 식중독 및 예방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식중독 예방 및 관리	6,369	7,088	7,088	6,033	△1,055	△14.8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1,239	1,289	1,289	1,289	0	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중인데, 이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공개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통하여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음식점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지정 받으려는 위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었으며, 매우우수(92개), 우수(82개), 좋음(67개) 항목 평가 후 85점 이상인 경우 각 등급으로 지정되었다. 2019년 8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영업자 신청 시 6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5점~90점 미만, 좋음: 80점~85점 미만).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2070-3052)

1) 코드: 일반회계 1232-300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점 위생개선 맞춤형 컨설팅(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현장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위생등급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지정평가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현장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도 예산안에는 총 1,557개소에 대해 컨설팅 1회당 11만 5천원씩 총 1억 7,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 2020년 예산안 편성 근거]

○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사업: 551백만원(전년동)
○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 225백만원(전년동)
○ 위생등급제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 334백만원(전년동)
○ 음식점 위생개선 맞춤형 컨설팅: 179백만원(전년동)
- 1,557개소 × 115천원 = 179백만원

주: 동 내역 중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사업 예산안 551백만원은 위생평가 위탁기관 운영비로,
위탁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분석의견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컨설팅을 받았으나,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 신청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컨설팅을 받은 업체와 받지 않은 업체 간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매우우수 등급 지정률은 45.1%, 그렇지 않은 업체는 36.1%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상위등급 지정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 2019년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현황(영업장 면적 200㎡이하)]

(단위: 개소, %)

구분	등급	컨설팅 받은 업체			컨설팅 받지 않은 업체		
		신청	지정	등급보류	신청	지정	등급보류
2018	합계	527	376	151	1,790	541	1,249
	매우우수	67	49 (18.4)	18	125	83 (15.3)	42
	우수	94	67 (17.8)	27	198	95 (17.6)	103
	좋음	366	260 (69.1)	106	1,467	363 (67.1)	1,104
2019	합계	257	144	41	1,300	582	201
	매우우수	103	65 (45.1)	2	297	210 (36.1)	31
	우수	41	25 (17.4)	5	188	106 (18.2)	16
	좋음	113	54 (37.6)	34	815	266 (45.7)	154

주: 1. 음식점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제2019-74호)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30일 접수건부터는 단일 등급으로 운영됨에 따라, 2019년 8월 29일 접수건까지 기재
 2. 2019년 8월 30일 이후 접수건(2019.09.16기준) : 컨설팅을 완료한 업소 46개소, 컨설팅을 받지 않은 업소 193개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설팅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8월기준)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각각 1,656개소, 1,318개소이나 컨설팅을 받은 업체 중 527(31.8%)개소, 257(19.5%)개소만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대상 업체들이 영업장 면적 200㎡이하인 영세업체임을 감안하면 컨설팅 지원 이후 위생등급제 신청률이 다소 저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를 고려하여도 31.8%(2018년), 19.5%(2019년)의 신청률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²⁾

2) 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아닌 위생등급제 준비를 혼자하기 어려운 영세업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등급제 신청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는 영세업체들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음식점 위생개선 맞춤형 컨설팅 현황]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예산	집행액	실집행액	컨설팅 받은 업체 수	컨설팅 받은 업체 중 위생등급제 신청한 건수(비율)
2018	179,000	175,420	175,420	1,656	527(31.8)
2019.6	179,000	178,642	125,049	1,318	257(19.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컨설팅 지원 영세업체에 대한 지속적 독려뿐 아니라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 신청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6,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63억원(11.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03억원, 양성평등기금 4,486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642억원이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749	8,094	8,094	10,327	2,233	27.6
- 일반회계	4,749	8,094	8,094	10,327	2,233	27.6
기 금	392,832	548,802	548,802	612,828	64,026	11.7
- 양성평등기금	259,083	391,195	391,195	448,614	57,419	14.7
- 청소년육성기금	133,749	157,607	157,607	164,214	6,607	4.2
합 계	397,581	556,896	556,896	623,155	66,259	11.9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87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90억원(3.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11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53억원, 양성평등기금 4,05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354억원이다.

[2020년도 예산안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¹⁾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16,415	565,902	565,902	546,572	△19,330	△3.4
- 일반회계	328,484	462,722	462,722	511,277	48,555	10.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931	103,180	103,180	35,295	△67,885	△65.8
기 금	332,921	481,573	482,869	541,153	58,284	12.1
- 양성평등기금	225,502	362,139	362,859	405,718	42,859	11.8
- 청소년육성기금	107,419	119,434	120,010	135,435	15,425	12.9
합 계	749,226	1,047,475	1,048,771	1,087,725	38,954	3.7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10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2억원(27.6%)가 증가하였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749	8,094	8,094	10,327	2,233	27.6

주: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5,46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3억원(△3.4%) 감소하였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8,484	462,722	462,722	511,277	48,555	1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931	103,180	103,180	35,295	△67,885	△65.8

주: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6,12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640억원(11.7%)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양성평등기금 3,77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1,571억원이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양성평등기금	259,083	391,195	391,195	448,614	57,419	14.7
청소년육성기금	133,749	157,607	157,607	164,214	6,607	4.2
합 계	392,832	548,802	548,802	612,828	64,026	11.7

주: 1.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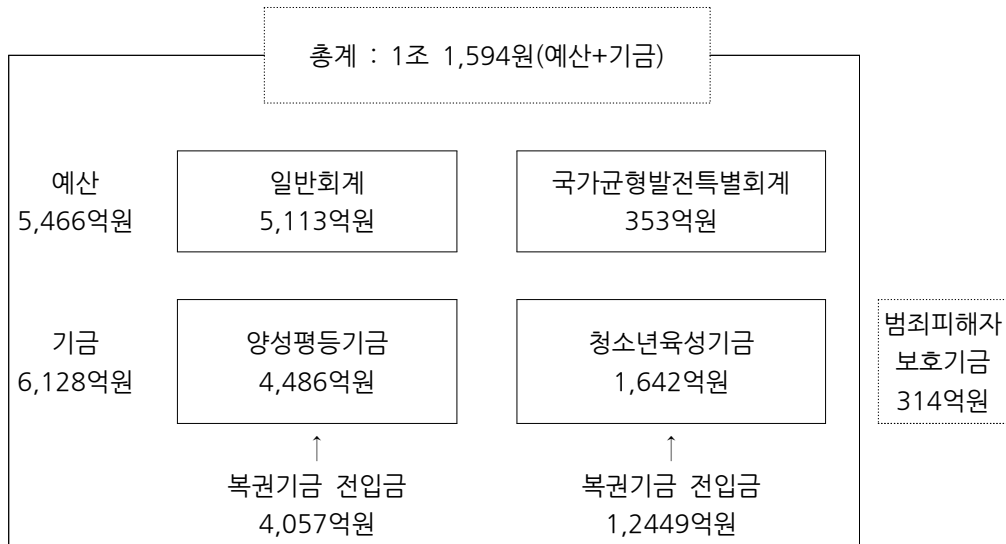
2. 2019년 수정계획안은 9월말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라. 재정구조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복권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각 4,057억원, 1,244억원이 전출될 예정이다.



주: 총계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새일센터 확충을 통해 경력단절 사전 예방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재편하여 세대별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자립, 고위 기청소년 조기 발견·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청소년 보호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강화로 양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여성폭력의 사각지대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 여성폭력 인식 개선과 여성폭력 예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표 대비 실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와 수요가구 간 연계 강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년도 62개소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집행률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여성가족부의 2020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15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가족실태조사 사업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욕구 및 수요 파악 등 가족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여성폭력방지정책추진기반구축 사업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통계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사업은 젠더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전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중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파악과 종합분석을 통해 중장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결혼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3개)	가족실태조사(5년 주기)	1,388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59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9,892
양성평등기금(1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3년 주기)	687
합 계		12,559

자료: 여성가족부

2020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여성정책전략기반 구축,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청소년정책기반강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아이돌봄 지원, 가족센터 건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여성사전시관,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아이돌봄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

원, 청소년시설확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등이 있다.

①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기념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은 청년 지역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젠더갈등의 원인 분석 및 대응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는 다양한 가족의 포용 및 인식 개선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④ 청소년정책 기반강화는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비의 반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은 공사비와 감리비가 증액되었으며, ⑥ 국립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국립청소년 생태센터와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건립 공사비가 증액되었다. ⑦ 아이돌봄 지원은 아이돌보미 채용 심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방지 사례관리 인력 확대 사업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⑧ 가족센터 건립은 전국에 가족센터 62개소 신규 건립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고, 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을 신규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19 ¹⁾		2020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7개)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399	399	949	550	137.8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1,032	1,032	1,600	568	55.0
	가족사업관리및연구	681	681	3,148	2,467	362.3
	청소년정책기반 강화	608	608	1,147	539	88.7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525	3,525	8,503	4,978	14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15,859	15,859	24,232	8,373	52.8
	아이돌봄 지원	224,592	224,592	243,993	19,401	8.6
국가균형 발전특별 회계(1개)	가족센터 건립	25,000	25,000	35,295	10,295	41.2
양성평등 기금(1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6,933	206,933	254,412	47,479	22.9

주: 1) 기금은 각각 2019년 당초계획안과 9월말 기준 수정계획안을 의미

1. 주요 증액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여성가족부

II

주요 현안 분석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향상 노력 필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¹⁾은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 공백 발생 시 가정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4억 100만원이 증액된 2,43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이돌봄 지원	108,377	224,592	224,592	243,993	19,401	8.6

자료: 여성가족부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19.4.26.)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아이돌보미 채용검증 및 교육강화(인·적성검사 도입 등), ② 방문모니터링 비중 확대 등 모니터링 내실화, ③ 처벌강화 및 근로여건 개선, ④ 아이돌보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위 개선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관련 예산 79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134-341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관련 예산 증액 현황]

구 분	세부 내역
아이돌보미 채용 검증 및 교육 강화 (1,926백만원 증)	- 인·적성검사 실시 442백만원(신규) - 소규모 교육 1,296백만원 - 사례집담회 및 치유프로그램 188백만원(신규)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등 (5,955백만원 증)	- 서비스제공기관 아동학대 사례관리(사전·사후 현장점검) 인력 3,888백만원 ’20년 신규 222명(신규) -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확충 등 2,050백만원 ’19년 617명 → ’20년 714명(+97명), 처우개선 2.8%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17백만원 ’19년 개소당 744만원 → ’20년 개소당 755만원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등 (50백만원, 신규)	연구용역 50백만원(신규)

자료: 여성가족부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향상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영아종일제돌봄 서비스는 만 2세(36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아종일제돌봄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9,000만원(2.5%)이 증액된 324억 9,700만원이다. 시간제돌봄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4억 1,900만원(2.9%)이 증액된 1,408억 4,500만원이다.

[2020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이돌봄 지원	108,377	224,592	224,592	243,993	19,401	8.6
영아종일제돌봄	19,758	31,707	31,707	32,497	790	2.5
시간제돌봄	65,714	137,426	137,426	140,845	3,419	2.9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의견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표 대비 실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019년에 대폭 확대되었는바, 전년도에 비하여 아이돌보미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크게 증가(7,800원→9,650원)하였고,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시간제돌봄 이용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지원가구수도 2018년 종일제 5,450가구, 시간제 40,390가구에서 2019년에는 종일제 8,000가구, 시간제 82,000가구로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2020년도의 경우 다른 지원조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만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분(240원)만 반영하여 9,650원에서 9,890원으로 소폭 인상하였다. 또한, 서비스 지원가구수도 2019년과 동일하게 종일제 8,000가구, 시간제 82,000가구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8 ~ 2020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비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안)
예 산		1,084억원	2,246억원	2,440억원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7,800원	9,650원	9,890원
정부지원 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제돌봄 이용시간 한도		연 600시간	연 720시간	연 720시간
지원가구	종일제	5,450가구	8,000가구	8,000가구
	시간제	40,390가구	82,000가구	82,000가구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19년 8월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아종일제의 경우 예산상 목표가구(8,000가구)의 41.9%인 3,355가구가 이용 중이고, 시간제의 경우 예산상 목표가구(82,000가구)의 68.9%인 56,511가구가 이용 중으로, 연말까지

이용가구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상 목표가구 수에 비하면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연도	영아종일제			시간제		
	예산	예산상 목표가구	실 이용가구	예산	예산상 목표가구	실 이용가구
2017	15,085	5,450	5,057	55,703	45,060	58,489
2018	19,758	5,450	4,538	65,714	40,390	60,053
2019. 8.	31,707	8,000	3,355	137,426	82,000	56,511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와 홍보 강화 등으로 하반기 이용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19년 8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이용자 수가 8.1% 증가('18년 8월 55,397가구 → '19년 8월 59,866가구)하였고, 이러한 추세라면 2019년도에 8만 가구 이상 달성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대비 2019년 서비스 이용가구 수를 거의 2배('18년 45,840가구 → '19년 90,000가구)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비하면 8.1% 증가수준은 다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 수를 2019년과 동일하게 90,000가구(종일제 8,000가구, 시간제 82,000가구)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2019년도 하반기 실제 이용가구 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 아이돌보미와 수요가구 간 연계 강화, 홍보·안내 강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2. 광역과 시·군·구 모니터링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필요 등

가. 현 황

내역사업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사례관리 전담인력 등 인건비와 행정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8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이돌봄 지원	108,377	224,592	224,592	243,993	19,401	8.6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9,186	12,754	12,754	18,709	5,955	46.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에 광역거점기관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인력을 올해와 같이 30명 운영할 예정이다.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근무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은 올해보다 97명 확대하여 714명 운영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현장모니터링 및 아이돌보미 대상 집담회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222명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등 현황]

(단위: 명)

구 분		수행 업무	인 원	
			19년	20년(안)
광역 거점기관	모니터링 인력	관할 시·군·구 내 이용가정 전화 모니터링 및 아이돌보미 활동 현장 점검	30	30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전담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연계, 이용자관리 등 아이 돌봄 지원사업 실무업무	617	714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아동학대예방 현장모니터링 및 아이돌보미 대상 집담회, 아동학대 발생시 사후지원	0	222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의견

첫째, 기존 광역거점기관의 모니터링 인력과 시·군·구의 신규 사례관리 전담 인력 간 역할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역할분담방안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돌봄 이용가정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광역거점기관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인원(30명)이 관할 시·군·구 내 이용가정 전화 모니터링 및 아이돌보미 활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소수의 인원(서울 4명, 경기 4명, 기타 시도 1~2명)이 광역 단위로 전화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에는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222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예방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기존 광역 단위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광역거점기관과 시·군·구 서비스 제공기관 둘 다 배치되면서 역할의 중복이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시·군·구의 사례관리 전담인력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광역거점기관의 모니터링 인력은 주로 전화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많아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등 광역과 시·군·구 모니터링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늘어난 인력이 실질적인 모니터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효과적인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의 일시 채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사례관리인력이 채용·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을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원칙적으로 1명씩 배치할 계획(시·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 운영예정)이고, 222명의 12개월 간 인건비 38억 8,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정부예산 확정에 맞춰 채용 공고 실시 및

2)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보고서에서도 광역거점기관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인력의 활동현장점검의 실적이 저조한 수준으로, 접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각 시군구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채용절차 진행으로 2020년 1월부터 적기 배치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여건과 적격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연초에 222명의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일시 채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사례관리인력이 채용·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1-3.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사업은 아이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4대 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아이돌봄 지원	108,377	224,592	224,592	243,993	19,401	8.6
돌보미양성 및 관리	13,719	42,555	42,555	51,742	9,187	21.6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의견

양적 증가 위주의 사업추진방식 대신 기존에 양성한 아이돌보미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대응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아이돌봄 지원 사업예산도 2015년 787억원 수준에서 2019년 2,246억원 수준으로 4년 간 185%가 증가하였고, 2020년에도 전년 대비 8.6% 증가

한 2,44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라 관련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도의 경우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시행에 따른 인·적성검사, 집담회, 치유프로그램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이 새로 배치되고,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도 97명 늘어날 예정이다.

[2015~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및 관련 인력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78,716	82,816	86,768	108,377	224,592	243,993
신규양성 아이돌보미	2,978	4,886	3,781	3,501	7,000	4,000
활동 아이돌보미	17,553	19,377	20,878	23,675	30,000	34,000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등	503	535	554	572	632	729
모니터링단	30	30	30	30	30	30
사례관리 전담인력	-	-	-	-	-	222

주: 2019년 신규양성 아이돌보미와 활동 아이돌보미는 연말까지 계획인원이다.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이에 따른 아이돌보미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나 부정 자격 취득 등 아이돌보미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의 경우 2015년 6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 12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취소의 경우에는 2015년 1명 이후 2016~2018년까지는 한명도 없다가 2019년의 경우 9월까지 2명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2019년 4월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 이후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점검강화와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5~2019년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자격취소 현황]

(단위: 명)

연 도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³⁾)					제33조(아이돌보미 자격취소 ⁴⁾)				
	1호	2호	3호	4호	계	1호	2호	3호	4호	계
2015년	2	0	2	2	6	0	0	1	0	1
2016년	2	1	1	4	8	0	0	0	0	0
2017년	4	1	4	6	15	0	0	0	0	0
2018년	5	2	2	7	16	0	0	0	0	0
2019년 9월	7	1	0	4	12	2	0	0	0	2

자료: 여성가족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확충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를 23,000명 신규로 양성하여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2018~2022년 연차별 아이돌보미 증원 계획]

(단위: 명)

과제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아이돌보미	2,000	7,000	4,000	5,000	5,000	23,000

자료: 여성가족부

3) <자격정지>

- 1호 :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중 하나 해당 시
- 2호 :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3호 :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 4호 :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4) <자격취소>

- 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호 :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호 :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4호 :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등에 치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지난 3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등 부정행위 발생은 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양적 증가 위주의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위 연차별 아이돌보미 증원 계획에 따를 경우, 모니터링 인력이나 사례관리 전담인력 등 아이돌보미 관련 인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아이돌보미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기존 관리인력의 업무 과중과 이로 인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이 소홀해지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신규 아이돌보미 확대라는 양적 증가 위주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활동중단 아이돌보미의 활동 유도,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마련 등 기존에 양성한 아이돌보미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관련 홍보사업 추진 철저 필요

가. 현 황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사업¹⁾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3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702	681	681	3,148	2,467	362.3
가족가치확산 사업	292	310	310	290	△20	△6.5
가족정책전략 지원사업	157	180	180	160	△20	△11.1
가정의 달 기념행사 및 홍보	105	98	98	98	0	0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0	0	0	2,600	2,600	순증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에 기반한 포용적·보편적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²⁾ 구체적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① 인식 측면에서는 모든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② 제도 측면에서는 차별적 법제를 개선하고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며, ③ 인프라 측면에서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133-331

2)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한 과제가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18.8.31.)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로드맵)(18.12.6.)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다.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 관련 추진과제]

	현행	개선
패러다임	▶취약계층 대상 선별적 정책	▶포용적·보편적 정책
인식	▶차별 및 편견 상존	▶모든 가족 존중 및 포용
제도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정책기본법
인프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자료: 여성가족부

이 중 인식 측면에서 여성가족부는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신규 내역사업인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다.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년 예산
국민소통	○ 다양한 가족 소통의 장 마련(상하반기 각1회)(방송연계)=300 ○ 가족다양성 수용도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50	350
매체 등 홍보	○ 홍보 콘텐츠 제작(대상별)=150 ○ 방송 홍보(1개월)=800 * 1개월×80회×10백만원 ○ 온라인(SNS, 유튜브, 인터넷포털 등) 홍보(2개월)=200 * 2개월×100백만원 ○ 다중이용시설(극장, KTX, 지하철, 버스, 옥외전광판 등) 홍보(1개월)=200 *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의 경우 1개월에 각 8천~1억원 수준 예산 소요 ○ 라디오 홍보(2개월)=200 * 2개월×30회×110만원×3개프로그램 ○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1편)=100 ○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연중)=250 - 웹툰·카드뉴스 등 인식확산 콘텐츠 제작·게재, 인식확산 이벤트	1,900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년 예산
	* 콘텐츠제작 및 이벤트(15백만원×10개월 = 150백만원), 플랫폼 유지보수(100백만원)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 홍보 콘텐츠(동영상) 제작=50 ○ 온라인(페이스북, 유튜브, 인터넷포털 등) 홍보(2개월)=200 * 2개월×100백만원 ○ 다중이용시설(KTX, 지하철, 버스 등) 홍보(1개월)=100	350
합 계	-	2,600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으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³⁾이라고 보고,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대국민 인식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신규 내역사업인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은 여성가족부 내 다른 인식개선·홍보 관련 사업과 비교해볼 때 예산액이 가장 많은데, 내년부터 다양한 가족 포용정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식확산 사업이라는 점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지속적·반복적 홍보매체의 노출이 중요한데 홍보효과가 있는 방송이나 온라인 등의 높은 광고단가를 고려할 때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타 홍보 관련 사업은 개별 사업을 안내하는 성격이 대부분으로 이와 예산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3)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91.4%에 이르고(18년 KBS방송문화연구소), 한부모 가족의 약 16%가 차별을 경험하였다는 조사(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2020년도 주요 홍보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 내역	20년 예산
대변인실	여성·가족정책의식확산	주요 정책과제 기획홍보 및 캠페인 주요 정책 매체활용 홍보 온라인 홍보, 홍보 운영 등	1,846
청소년정책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홍보 등	6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대국민 홍보 등	52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인터넷게임·인터넷 건전이용 활성화 홍보 등	70
가족정책관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인증설명회, 홍보	14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홍보 등	51
권익증진국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성범죄자 예방 및 홍보	418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교육·홍보자료 제작 등	198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 예방 홍보	90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이주여성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76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홍보사업	400

자료: 여성가족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인식개선을 추진하면서 제도측면에서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명칭인 ‘가족’으로 변경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법이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발의의원	발의일	주요 내용
남인순의원	2018.12.7. * 미상정	-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 가족의 정의에 ‘사실혼’ 포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가. 현 황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사업¹⁾은 국내외 한인여성 간 활동분야별 네트워킹을 통한 연대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 기반 구축 및 여성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412	399	399	949	550	137.8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사업	0	0	0	550	550	순증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내년도에 북경행동강령²⁾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³⁾ 채택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예산으로 5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i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6-361

2) 「북경행동강령」

○ 채택 경과

- 유엔은 멕시코(1975), 코펜하겐(1980), 나이로비(1985), 북경(1995)에서 네 차례의 세계여성회의를 개최, 이러한 세계여성회의를 통해 성평등은 전 세계적인 의제가 됨

- 제4차 세계여성회의(1995년, 북경)에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

○ 의의: 경제·사회·문화 및 정치적 결정에 평등한 참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 마련

3)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 수립 배경

- '90년대 코소보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에 의한 여성폭력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

- 201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1325호) 채택

○ 주요 내용: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

나. 분석의견

기념사업 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 기념사업’의 사업내용은 크게 ① 국제회의 개최, ② 이행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 ③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나뉘는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등 기념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내용	20년 예산안
국제회의 개최	○ 외빈초청비: 170백만원 ○ 행사운영비: 115.4백만원 ○ 임차료: 23백만원 ○ 인건비: 32백만원 ○ 자문 등 기타 경비: 59.6백만원	400
이행 평가 및 향후 발전전략 수립	○ 조사비: 12.5백만원 ○ 인쇄비 및 유인물비: 5.2백만원 ○ 회의비: 2.8백만원 ○ 전산처리비 및 임차료: 3.8백만원 ○ 인건비: 18.6백만원 ○ 일반관리비 및 부가세: 7.1백만원	50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 추진	○ 25백만원(평균)×4개단체: 100백만원	100
합 계	-	550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 중 ‘시민사회와의 협력추진’ 1억원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등을 기념하여 성평등 및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제회의 개최에 맞추어 북경행동강령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단체(NGO 등)의 행사, 교육·홍보 활동, 전시·공연 등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공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및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동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⁴⁾에 따라 3년마다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향후 결산 등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신규 내역사업인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등 기념사업 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가. 현 황

가족센터 건립 사업¹⁾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알맞은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2억 9,500만원이 증액된 35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족센터 건립	0	25,000	25,000	35,295	10,295	41.2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도에 추진하는 가족센터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62개 기초지자체의 가족센터 건립예산으로 35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과거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실행행태가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는바, 내년도 62개소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행태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최근 4년 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실행행태 10.7%, 2019년 8월 현재 0.2%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33-334

[최근 4년 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6	-	-	-	-	-	-	-	-	-	-
2017	5,000	5,000	5,000	5,000	-	5,000	534	4,466	-	10.7
2018	-	-	-	-	-	-	-	-	-	-
2019.8	25,000	25,000	6,000	6,000	-	6,000	51	-	-	0.2

자료: 여성가족부

2019년도에 편성된 5개소의 가족센터 건립예산 250억원의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교부액은 60억원이 집행되었고 교부액 중 실집행액은 5,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가족센터 건립(5개소)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교부액 (국비)	실집행액			사업추진 현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64,300	25,000	39,300	6,000	102	51	51	-
서울 광진구	10,000	5,000	5,000	-	-	-	-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정(10월)
경기 군포시	13,800	5,000	8,800	1,500	22	11	11	설계용역 공모 예정(11월)
충북 청주시	12,000	5,000	7,000	1,500	-	-	-	설계용역 공모중 (8~10월)
충남 홍성군	18,500	5,000	13,500	1,500	42	21	21	설계용역 공모 예정(9월)
전남 신안군	10,000	5,000	5,000	1,500	38	19	19	설계용역 공모 예정(9월)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19년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2019년 편성된 250억원은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안 국회확정 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설계용역 공모 등 착공 전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에 건립예정인 가족센터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6월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생활SOC복합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8월 62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였고,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지자체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2019년의 경우 한 개소 당 국비 50억원을 단년도로 편성하여 실행행렬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가족센터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따라 한 개소 당 총사업비를 국비 10억 이하(기본형) 또는 15억 이하(확장형)로 하고, 2~3년에 걸쳐 분할 편성하였는바 2019년에 비해서는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가족센터 건립 추진 경과 및 지원내용]

- 추진 경과
 - 생활SOC복합화 대상사업(10종) 선정(19.6월)
 - * 기본형(상담·교육·돌봄) 10억, 확장형(기본형+다목적 소통교류) 15억 이내
 - 생활SOC복합화 사업 신청(19.8월, 지자체→균형위)
 - 가족센터 건립 예산요구안 편성 및 심의(19.8월)
- 가족센터 건립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복합화 대상시설 간 복합화로 건립하는 가족센터
 - 지원규모: 정액보조(기본형 10억이하, 확장형 15억이하),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자료: 여성가족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에 계획 중인 가족센터는 정부의 생활SOC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미리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2019년 대비 개소당 총사업비를 소액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예년 사업에 비해 개선된 점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매칭 지방비 확보의 어려움이거나 시설 설계·건축 심의 등 사전적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0년도에 62개 지자체의 가족센터 건립을 일시에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실행행렬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¹⁾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징후)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억 4,7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5,446	18,973	19,549	24,396	4,847	24.8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4,390	16,627	16,627	19,385	2,758	16.6
청소년자립지원관	403	623	623	1,009	386	62.0
청소년회복지원시설	0	670	670	678	8	1.2
청소년복지시설 내실화	202	436	436	485	49	11.2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575	617	617	786	169	27.3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0	0	0	2,053	2,053	순증

자료: 여성가족부

내역사업별로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27억 5,800만원이 증가한 193억 8,5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업에 전년대비 3억 8,600만원 증가한 10억 9백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각각 8개소, 2개소 확대한데 기인한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청소년육성기금 2254-432

나. 분석의견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자체별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시설 확충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에 청소년쉼터를 전년 대비 8개소를 늘려 146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거리상담전문요원을 전년대비 34명을 늘려 124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전년대비 2개소 늘려 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각의 세부 예산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쉼터 등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편성내역	20년 예산안
청소년쉼터	○ 146개소×212.22백만원×보조율 50%=15,493백만원	15,493
거리상담 전문요원	○ 124명×33.237백만원×보조율 50%=2,061백만원	2,061
청소년 자립지원관	○ 8개소×212.22백만원×보조율 50%=849백만원	849

자료: 여성가족부

이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차원에서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2022년까지 청소년쉼터는 164개소로, 거리상담전문요원은 194명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1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일자리(1,2단계) 확정 내용]

구 분	사업내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단계	청소년쉼터(개소)	130	138	146	155	164
2단계	거리상담 전문요원(명)	60	90	124	158	194
	청소년자립지원관(개소)	4	6	8	11	16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와 거리상담전문요원,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지속적인 확대는 ① 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라는 본래적 목적과 함께 ②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수적인 목적이 함께 고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출 등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의지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어렵고,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청소년쉼터는 2019년도에 전년대비 8개소 늘어난 138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나 8월 현재 134개소가 운영 중이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도 6개소 운영계획이나 8월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9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설치 진행상황]

구 분	2019년 신규		1개소 당 운영비	진행 상황
	계획	실제		
청소년쉼터	+8개소	+4개소	인건비, 사업비 등 2억 760만원	4월에 4개소 추가, 6월에 1개소 추가, 나머지 4개소 수요조사 중
청소년 자립지원관	+2개소	0개소	인건비, 사업비 등 2억 760만원	10월 개소 예정 1곳, 연말 개소 예정 1곳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와 거리상담전문요원,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자체별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시설 확충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¹⁾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적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100만원이 감액된 6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은 대상인원 감소와 신청률을 하향 조정(80%→75%)함에 따라 전년대비 감액편성되었다.

[2020년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 결산	2019		2020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3,144	6,764	6,764	6,503	△261	△3.9

자료: 여성가족부

나. 분석의견

첫째, 여성가족부는 카드사 및 유통점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자바우처 유통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와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신청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예산은 2016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소관을 이관하였고, 기존의 보건소 등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상품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9년 1월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231-312

여성가족부는 예산상의 신청률을 2019년 80%에서 2020년에는 75%로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신청률이 2018년에 69.9%, 바우처방식으로 바뀐 2019년에는 7월말 기준으로 68.6%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올해는 전자바우처 지원방식 도입 첫 해로, 그동안 현물을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다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바 연말기준으로는 신청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지 2년차이고, 올해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편의를 위해 바우처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했음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70%를 밑도는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저조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 사업은 대상자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현재 전자바우처 유통점을 살펴보면 카드사별로 유통점의 수가 제한적이다.²⁾ 특히 여성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별로 온라인 유통점이 1곳 또는 2곳에 불과하여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바우처제도의 장점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전자바우처 유통점 현황]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부츠
삼성카드	삼성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VIC마켓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카드사 및 유통점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자바우처 유통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와 적극적 안내 등을 통해 신청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연내 농협하나로마트, 세븐일레븐 등을 유통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후 현재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둘째,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률(%)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성과목표가 과소설정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기준과 2018년, 2019년 실제 신청률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률(%)을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성과목표를 62%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건위생물품의 신청률이 2018년도에 69.9%, 2019년에는 7월말 기준으로 68.6%로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신청률을 75%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치는 지나치게 과소하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³⁾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예산편성 기준과 2018년과 2019년의 실제 신청률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여성가족부는 2020년 성과계획서 작성시기가 2019년 초 바우처 제도가 막 시작된 때로, 실제 바우처 신청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정한 것으로 향후 실제 신청률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상향하여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중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 려 진 예산분석관
김 성 은 예산분석관
권 순 진 예산분석관
최 경 덕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김 승 미 자료분석지원요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금양문화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22-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